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이상돈 강경종
강일규 현영섭

정책연구 2009-45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이상돈 강경종
강일규 현영섭

머 리 말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자생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육성 사업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예산 확보, 프로그램 운영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및 방향에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이 폐지될 경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조직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안 마련과 함께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인재육성 정책 기초와 방향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육성 관련 개념, 정책, 법령을 고찰하고,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년 기본연구 2009-60번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상돈 박사가 책임자로서, 강경중, 강일규, 현영섭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수고한 연구팀과 도움을 아끼지 않은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0년 4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권 대 봉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제2장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정책 및 법령

제1절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 9

제2절 지역인재육성 관련 정책 · 12

제3절 지역인재육성 관련 법령 · 26

제4절 시사점 · 33

제3장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제1절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 37

제2절 지역인재육성사업 성과 및 문제점 · 51

제3절 시사점 · 58

제4장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및 운영체제 · 61

ii 목차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사례 · 66

제3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 91

제4절 시사점 · 105

제5장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제1절 법령 정비 기본방향 · 109

제2절 법령 정비 세부방안 · 111

제3절 법령 정비 세부방안 종합 · 123

제6장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비전 · 127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추진과제 · 129

제3절 법령 정비 방안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 135

Summary · 139

참고문헌 · 143

부록 · 145

〈표목차〉

- <표 1-1> 연구방법 및 절차 · 5
- <표 1-2> 세미나 개요 · 7

- <표 2-1>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 13
- <표 2-2> 경제 환경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18
- <표 2-3> 기존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인재정책의 비교 · 19
- <표 2-4>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지역인재육성 관련 주요 내용 · 28
- <표 2-5>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안에 따른 조치결과 · 29
- <표 2-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인재육성 관련 주요 내용 · 31
- <표 2-7> 평생교육법의 지역인재육성 관련 주요 내용 · 32

- <표 3-1>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방향 · 37
- <표 3-2>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 41
- <표 3-3> 지역인재육성 사업 영역 · 42
- <표 3-4> 2010년 지역인재육성 사업 구성 · 43
- <표 3-5> 2010년 기본사업의 주요 내용 · 44
- <표 3-6> 2010년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 · 45
- <표 3-7> 지역별·사업별 사업 신청 현황 · 46
- <표 3-8> 사업 분야별 신청액 및 대응투자비율 · 47
- <표 3-9> 사업 분야별 선정 현황 · 48
- <표 3-10> 기초 자율 공모사업 선정 결과 · 48
- <표 3-11> 광역 자율 공모사업 선정 결과 · 49
- <표 3-12> 광역경제권 공모사업 · 50
- <표 3-13> 연도별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예산운영 현황 · 51
- <표 3-14>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례 현황 · 52
- <표 3-15>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인재육성 관련 기관 예시 · 54

- <표 4-1> 지자체별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행정조직 현황 · 64
- <표 4-2>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 70
- <표 4-3>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운영 현황 · 71
- <표 4-4>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예산 · 72
- <표 4-5> 광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운영 현황 · 75
- <표 4-6>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 82
- <표 4-7>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핵심세부 과제 · 83
- <표 4-8>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과제 추진 현황 · 86
- <표 4-9>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현황 · 90
- <표 4-10>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성과 · 92
- <표 4-11>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기타 성과 · 92
- <표 4-12>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 · 93
- <표 4-13>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 · 94
- <표 4-14>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애로사항 · 96
- <표 4-15>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향후 역할 및 기능 · 98
- <표 4-16>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향후 기타 역할 및 기능 · 99
- <표 4-17>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 101
- <표 4-18>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기타 대안 · 101
- <표 4-19>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추진 주체 · 102
- <표 4-20>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추진 주체 선정 이유 · 103
- <표 4-2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령 · 104
- <표 4-2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법령 · 104

- <표 5-1>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주체, 효과, 제한 및 실현가능성 · 112
- <표 5-2> 평생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안) · 113
- <표 5-3> 평생교육법 개정 조문(안) · 114
- <표 5-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주체, 효과, 제한 및 실현가능성 · 115

- <표 5-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안) · 116
- <표 5-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조문(안) · 117
- <표 5-7>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추진주체, 효과, 제한 및
실행가능성 · 119
- <표 5-8>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구성 및 개정 조문(안) · 121
- <표 5-9>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비교 종합 · 124

- <표 6-1> RHRD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보완 방안 · 130
- <표 6-2> RHRD 센터 사업 추진 방향 재설정 방안 · 132
- <표 6-3> RHRD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 방안 · 133
- <표 6-4> RHRD 센터 내부 역량 기반 구축 · 134
- <표 6-5> 법령 정비 방안의 추진여부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관련 여건 변화 · 135
- <표 6-6> 법령 정비 방안의 추진여부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 136

[그림목차]

- [그림 2-1]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체계 · 13
- [그림 2-2] 지역발전정책에 제시된 지역인력양성 추진 방향 · 15
- [그림 2-3] 지역인재육성 정책 동향 · 20
- [그림 2-4]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운영기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예시 · 22
- [그림 2-5] 지역인적자원개발추진기반 구축기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
계 · 24
- [그림 2-6]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내실화 및 활성화기의 시도별 지
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 25

- [그림 3-1]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 체제 · 40

- [그림 4-1]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 62
- [그림 4-2] 전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방향 · 63
- [그림 4-3]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비전 체계 · 67
- [그림 4-4]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체제 · 68
- [그림 4-5]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 · 69
- [그림 4-6] 광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 · 74
- [그림 4-7] 경남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비전체계 · 78
- [그림 4-8] 경남인적자원개발센터의 사업 추진체제 · 79
- [그림 4-9]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 · 81
- [그림 4-10]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비전체계 · 87
- [그림 4-11]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 · 88

- [그림 5-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의 기본 방향 · 110

- [그림 6-1]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비전 체계 · 128

【요약】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정책 및 법령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지역인재육성 사업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한다.

셋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넷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도출한다.

다섯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도출한다.

2.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정책 및 법령

지역인재육성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균형 및 배분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을 대체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역인재육성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계승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적, 정책적, 법령상의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지역인재육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반영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대상은 지역발전 및 지자체에 학령인구 및 성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영역 측면에서 지역인재육성은 인적

자원의 양성, 배분·활용, 사회적 자본 형성, 기반구축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목표 측면에서 지역인재육성은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 지역경쟁력 강화, 국가수준의 인재육성 목표 달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인재육성은 국가수준의 인재육성 목표 달성과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령인구 및 성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은 2000년에 인적자원 총괄 부총리제 및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에 관한 추진체제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및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과 함께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변화 동향은 크게 ①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시범 운영기(2002~2003년), ②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기반 구축기(2004~2005년), ③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내실화 및 활성화기(2006~2007년), ④ 지역인적자원개발 전환기(2008년 이후)로 구분된다.

지역인재육성 관련 법령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평생교육법이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는 지역인재육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설치,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지

정,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지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지역인재육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이다. 평생교육법에서는 지역인재육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3.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기본방향은 경쟁 공모 시스템 유지 및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RHRD 정책역량 강화와 현장중심의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2010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세부 추진방향은 균등배분 기본사업비 감액, 선택과 집중 강화, 지자체의 역량 및 책무성 강화, 전문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평가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지역인재육성 사업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점이 되어 사업을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역내 교육청,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체계(network)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영역은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과 활용,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기반 구축의 4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은 기본사업과 공모사업으로 구성된다. 기본사업은 시도별로 균등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와 시

도 공동사업에 총 13억 원이 지원된다. 공모사업은 2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현장수요 기반 사업에 20억 원, 전년도 우수사업에 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현장수요 기반 사업은 기초단위 과제, 광역단위 과제, 광역경제권 단위 과제로 구성된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과로는 지자체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지자체의 지역인재육성 조례 제정,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센터와 협의회 설치, 지역인재육성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전략산업 및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 등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문제, 지역인재육성 담당 인력 부족, 지역인재육성 전담 조직 축소,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예산 감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성과는 지역인재육성사업 도입 이후 이루어진 각종 센터 및 협의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기본적인 지역인적자원개발추진 등이고, 프로그램 운영, DB구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 창출부분에 대한 성과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같은 부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현장 수요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입법 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 조직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센터의 위상 및 지위 저하, 예산 확보

의 어려움, 중앙정부의 사업 지원 축소, 사업의 지속성 저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향후 역할 및 기능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사업에 대한 참여, 자체 사업 추진 역량 확보, 센터별 사업 특성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고용 및 일자리와 연계한 사업 추진, 사업성과에 대한 계량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제시된 지역인재육성 및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과 같은 신규 지원법 제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지역인재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인재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음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법령 정비의 방향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지역인재육성 관련 법령 마련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목표로 ①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 근거 마련,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③ 지역인재육성 관련 국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설정하였다. 법령 정비 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제시된 법령 중 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②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③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④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과 지정, ⑤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이 타 법령에 추가되거나, 새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정법령으로는 현재 지역인재육성사업은 평생교육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제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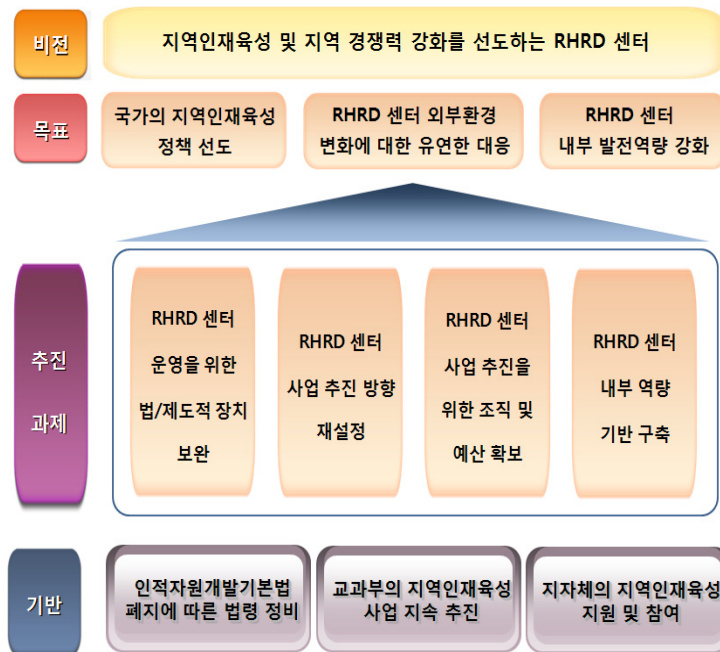
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 타 법령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등의 신규 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6.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비전으로는 지역인재육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로는 국가의 지역인재육성 정책 선도, RHRD 센터의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RHRD 센터 내부 역량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추

진과제로는 RHRD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보완, RHRD 센터 사업 추진 방향 재설정, RHRD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 RHRD 센터 위상 강화 및 인력 확보로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지자체의 지역인재육성 지원 및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이 추진될 경우 사업 추진 방안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주요 방향인 초광역사업 및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

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비용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는 법령 정비 방안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센터 구성원들의 신분 안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센터 운영 방안 차원에서는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 추진 방안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타 정부부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 방안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연계된 사업 추진을 통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거나 타 정부부처 사업 참여를 통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확보 방안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센터 운영 방안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중점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제 1 장 서 론

강경종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정보화가 가속되면서 생산요소의 지역 간,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이 발전의 견인차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정보화는 각 지역단위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경쟁하고 협조하는 지방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인재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되어 왔으며, 센터를 통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왔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은 2002년에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에 대응하여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을 위한 모델을 정립하고, 부산, 광주, 충북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토대로 13개 시도에 지자체,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청 등이 연계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RHRD 협의체 구축,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설립, 조례제정 및 담당부서 신설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수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인 자율과 경쟁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및 사업의 변화 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현영섭 외, 2008). 이전 정부에서는 지식기반사회의 핵심동력인 인적자원개발에 정부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국가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과 지역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였지만, 정부의 정책기조가 균형 및 배분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인적자원개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2003년부터 추진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행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동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대한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총리제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폐지되면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폐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따라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폐지될 경우 지역단위의 인재육성 지원체제인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에 대한 법령 정비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구들이 중복적으로 설치되어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기구의 통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김진덕, 2008). 인적자원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정책들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에 유사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구들이 중복적으로 설치되었다. 즉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평생교육법에 의한 지역평생교육협의회,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둔 지방고용심의회 등 관련 개별 법령에 기

초하여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들이 지역에 다수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지역에 설치된 각종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위원의 중복성이 높아 각 기구의 역할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기구의 통합을 통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지역인재양성 정책의 변화 방향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중복적인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구들의 통합을 위해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재양성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와 과제를 도출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조정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의 변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정책 및 법령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지역인재육성 사업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한다.

셋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넷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도출한다.

다섯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도출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정책 및 법령 고찰
 - 지역인재육성 개념 고찰
 - 지역인재육성 관련 정책 고찰
 - 지역인재육성 관련 법령 고찰

-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분석
 - 지역인재육성사업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
 -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및 운영체제 분석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사례 분석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도출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의 기본방향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세부 방안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도출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비전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영역별 로드맵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절차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 절차	연구 내용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정책 및 법령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육성 개념 고찰 • 지역인재육성 관련 정책 고찰 • 지역인재육성 관련 법령 고찰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분석 • 지역인재육성사업 성과 및 문제점 분석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및 운영체제 분석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사례 분석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도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법령 정비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의 기본방향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세부 방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비전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영역별 로드맵

가. 문헌고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개념, 정책, 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의 현황, 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지, 정책자료 및 인터넷 자료의 문헌을 고찰하였다. 문헌고찰은 정부 및 유관기관 문건 및 보고서(지역인재육성 사업 기본계획, 지역인재육성 사업 평가보고서, 지역인재육성 사업 선정결과 자료),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회 및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 관련 자료, 13개 시·도 인적자원개발센터 보고서 및 자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관련 보고서를 고찰하였다.

나. 설문조사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향후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도출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기관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여 13개 시·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과 센터원, 그리고 RHRD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관용 설문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관련 주요 현황과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관한 개방형 설문지로 구성하였으며, 개인용 설문지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향후 역할과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기관용 설문지에는 13개 센터 중 8개 센터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개인용 설문지에는 총 2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 세미나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발표, 토론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표 1-2> 참조). 세미나는 2010년 4월 14일에 정부부처 사업관계자(교육과학기술부), 연구진, 발표자, 토론자 및 각 지역의 센터장 및 센터원 등 총 47명이 참여하였으며, 세미나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전환기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한편 세미나에서 논의된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기능 및 향후 발전방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과 관련된 내용은 본 연구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방안과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에 반영하였다.

<표 1-2> 세미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일시	• 2010년 4월 14일(수) 11:00 ~ 19:30
장소	• 팔레스호텔
목적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발표 및 토론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모색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관련 법률 폐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 위상 논의
발표 주제	•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 전환기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 쟁점과 대안
참석 인원	• 정부부처(교육과학기술부) 사업관계자 6인 • 연구진 4인 • 좌장 및 발표자 3인 • 토론자 2인 • 각 지역 센터장 및 센터원 28인 • 연구지원 4인

제 2 장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정책 및 법령

이상돈 · 강일규

제1절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지역인재육성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균형 및 배분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을 대체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역인재육성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계승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홍영란, 2009). 이러한 지역인재육성의 개념은 크게 학문적 개념, 정책적 개념, 법령상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학문적 개념

학문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Nadler(1970)에 따르면, 인적자원개발은 행동변화를 위해 설계되고 특정 시간 동안에 실시되는 일련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정의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은 개인과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훈련 및 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의 통합적 사용(McLegan, 1989),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학습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분야(Watkins, 1989), 직무, 개인, 조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성과향상과 개인성장을 위해 조직에서 실행되는 조직화된 학습활동(Gilley & Egglan, 1989), 성과향상을 위해서 조직개발과 개인훈련 및 개발을 통해서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Swanson & Holton, 2001), 조직구성원에게 현재 또는 미래의 직무요구에 필요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체계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활동(Desimone et al, 2002)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개념을 종합하면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은 조직상황에서 학습의 방법을 주요 방법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영역을 개인개발, 조직개발, 경력개발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현영섭 외, 2008).

2. 정책적 개념

정책적으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은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National HRD)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양대 정책으로 기능해 왔다. 즉 국가인적자원개발은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로서 전체 국민과 국가를 대상으로 고려한 반면,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사회 혹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정책상의 목표는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균형발전에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인재강국이라는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정책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인재육성정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인재육성은 국가수준의 인재육성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데 목표가 있다(현영섭, 2008). 또한 정책 영역으로서 지역인재육성은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과 활용,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기반구축의 4가지 범주로 구분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즉 인적자원 양성 측면에서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평생학습 등을 포

괄하며, 인적자원 배분·활용 측면에서는 취업, 인력수급,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고용정책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자본 형성 측면에서는 인식전환, 신뢰구축 등 사회·문화·환경의 형성(social capital)을 의미하며, 기반구축 측면에서는 DB구축, 네트워크, 조직, 인력, 제도, 연구 등의 인프라가 포함된다.

3. 법령상 개념

법령상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통해 지역인재육성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르면, ‘인적자원’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2조).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정의를 토대로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과 사회규범 및 네트워크 형성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임준희, 2006).

이상의 학문적, 정책적, 법령상의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지역인재육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반영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대상은 지역발전 및 지자체에 학령인구 및 성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영역 측면에서 지역인재육성은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활용, 사회적 자본 형성, 기반구축을 포함한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목표 측면에서 지역인재육성은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 지역경쟁력 강화, 국가수준의 인재육성 목표 달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인재육성은 국가수준의 인재육성 목표 달성과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령인구 및 성인을 포함하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2절 지역인재육성 관련 정책

1. 지역발전정책

가. 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이명박 정부에서는 “균형·혁신·분산”에서 “상생·경쟁·분권”으로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에 따른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기본방향으로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 공간 구축,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 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를 설정하였다.

[그림 2-1]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체계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08). 2008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29쪽.

한편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추진전략으로 ①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②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견인, ③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분권강화, ④ 수도권·지방 동반상생발전, ⑤ 기존 시책 발전·보완의 5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전략	주요 내용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3차원적 국토개발 추진 -기초생활권 : 163개 시·군 단위의 지역 개발로 삶의 질 개선 -광역경제권 : 5+2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화 -초광역개발권 : 열린 국토공간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개발

<표 계속>

전략	주요 내용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을 선정·육성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 마련 및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 시도 전략산업의 연계·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분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적 성격이 강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지방분권·자율성 제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추진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자율적 계획·개발권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 기업유지와 투자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수도권 택지·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 환원
기존 시책의 발전적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도시 : 자족기능 보완 및 중장기적으로 광역경제권과 연계하여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 : 정주·자족기능을 조기 확충, 대학·첨단기업·연구소 등을 적극 유치 기업도시 : 입주기업의 지원 강화, 주변 산업단지 연계한 광역경제권 내 성장축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08), 2008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31~32쪽 재구성.

나. 정책 주요 시책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중 지역인재육성 정책과 관련이 있는 광역경제권 전략, 기초생활권 전략, 초광역개발권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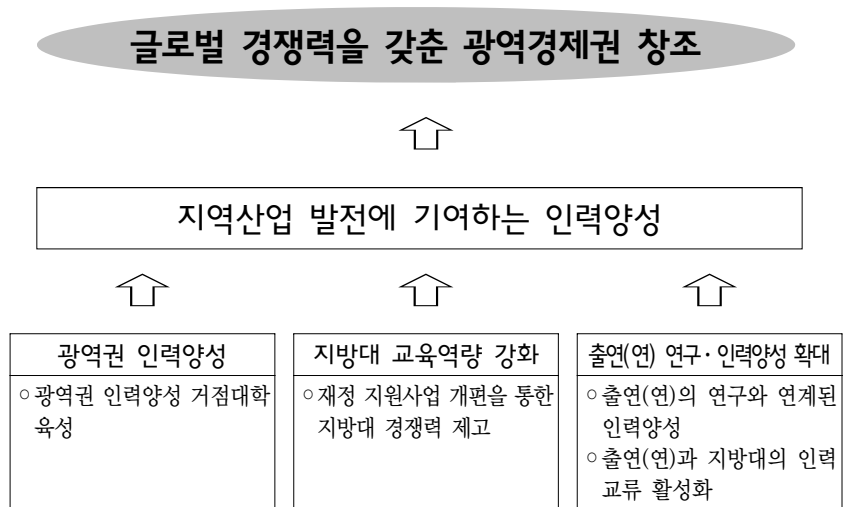
1) 광역경제권 전략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선도프로젝트 추진, 선도프로젝트 추진 기반 구축,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확립 등으로 구성된다. 이 전략에서는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 및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고 지역 특화발전

을 위한 규제 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등 광역경제권 추진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선도 프로젝트 이외에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광역경제권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인재육성과 관련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이 전략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 창조에 있어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력양성을 지역인력양성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광역권 인력양성,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 출연(연) 연구·인력양성 확대를 세부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2] 지역발전정책에 제시된 지역인력양성 추진 방향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08), 2008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43쪽.

2) 기초생활권 전략

기초생활권 전략에서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제공되는 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주민들이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기초생활권 발전비전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계획의 수립,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과 소득창출, 인접 시·군과의 공동·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광역경제권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하여 농산어촌과 거점도시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초광역개발권 전략

초광역개발권 전략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초광역 성장지대를 육성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장소경쟁에 부응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 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의 신성장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서·남-북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광역경제권 간 연계 개발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 개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성을 살려 대외개방형 4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내륙축도 검토하여 초광역개발 권역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내륙벨트의 경우 균특법 개정 후 지역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권역 및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 지역인재육성 정책

가. 정책 방향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방향은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환경 차원에서는 산업사회, 국지시장, 청년층 중심 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 글로벌 마켓의 경쟁과 속도 중시,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정책 및 경쟁전략 차원에서는 거시경제정책 중심, 중앙집권, 비교우위전략, 요소비용 경쟁력, 대량생산체제, 가격경쟁력 우선 전략에서 미시경제정책 중심, 지방분권, 경쟁우위전략, 유연생산체제, 품질경쟁력 우선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차원에서는 경직-유연 노동시장, 실업대책 중심 정책, 공급자 중심 정책, 사회보장금 중심 복지정책, 종합고용안정센터(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분리), Low Road Strategies에서 건강한 노동시장(DHLM), 일자리 창출 및 실업예방정책 중심, 수요자-공급자 파트너십, 일자리 중심 복지정책, 학습고용센터(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통합적 접근), High Road Strategies로 변화하고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정책의 경우 기능인력 양성, 재직자 및 실업자 중심, 기능숙련 훈련과 동일시, 중앙정부 주도, 직업훈련기관 중심에서 지식노동력 양성, 생산가능연령인구 전체 대상, 종합적 직업능력 개발, 지역중심 파트너십, 대학·전문대학·직업훈련기관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 2-2> 경제 환경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New Paradigm	Old Paradigm
경제 환경 및 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사회 • 글로벌 마켓(경제주권 약화) -경쟁과 속도 • 고령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사회 • 국지시장(경제주권 강화) -국내기업 보호 • 청년층 중심 사회
경제정책 및 경쟁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경제정책(노동시장 정책) 중심 • 지방분권 지방주도-중앙지원 중심 (지방과 중앙의 파트너십 전략) • 경쟁우위전략 -지식경쟁력, 속도 • 유연생산체제(네트워킹과 파트너십) • 품질경쟁력 우선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정책(재정금융정책) 중심 • 중앙집권(행·재정의 중앙 집중) -상의하달, 지시명령, 규제중심 • 비교우위전략, 요소비용 경쟁력 • 대량생산체제(규모의 경제와 공정 간 분업) • 가격경쟁력 우선 전략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노동시장(DHLM) • 일자리 창출 및 실업예방정책 중심 • 수요자-공급자 파트너십 • 일자리 중심 복지정책 • 학습고용센터(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통합적 접근) • High Road Strate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직-유연 노동시장 • 실업대책 중심 정책 • 공급자 중심 정책 • 사회보장금 중심 복지정책 • 종합고용안정센터(노동시장과 교육 시장의 분리) • Low Road Strategies
직업능력 개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노동력 양성 • 생산가능연령인구 전체 대상 • 종합적 직업능력 개발 • 지역중심 파트너십 • 대학·전문대학·직업훈련기관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인력 양성 • 재직자 및 실업자 중심 • 기능숙련 훈련과 동일시 • 중앙정부 주도 • 직업훈련기관 중심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술 균형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기술 균형 경제

자료: 이효수(2009). 국가발전과 지역인재육성정책, 10쪽.

이러한 경제 환경 및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2008년 이후 정부의 5대 국정지표에 인재대국이 포함되면서 지역인재육성 정책은 기존에 형성된 기반을 토대로 지역인재육성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자율과 경쟁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하는 과정에 있다. 기존의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인재육성정책을 비교해 보면, 지향점은 수월성 및 평등성에서 창의력 및 경쟁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책목표는 품성과 지식 및 기술능력 제고에서 모두를 위한 창의적 교육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정책원리는 균

형과 조화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변화하였으며, 추진방식의 경우 중앙정부와 기관 주도에서 현장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정책평가는 조사·분석·평가에서 성과 및 산출 평가로 변화하였다.

<표 2-3> 기존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인재정책의 비교

구분	인적자원개발정책	인재정책
지향점	• 수월성/평등성	• 창의력/경쟁력
정책목표	• 품성과 지식·기술능력 제고	• 모두를 위한 창의적 교육
원리	• 균형과 조화	• 자율과 경쟁
추진방식	• 중앙정부/기관 주도	• 현장/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중심
평가	• 조사·분석·평가	• 성과(산출) 평가

자료: 김진덕(2008). 새정부 RHRD 정책의 방향과 시사점, 139쪽.

이러한 정책 방향의 변화에 따라 지역인재육성 정책은 기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내실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주체인 지자체가 정책기획, 유관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기획 및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나. 정책 동향¹⁾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은 2000년에 인적자원 총괄 부총리제 및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에 관한 추진체제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및 제1차 국가인

1) 강일규 외(2009). 지역 인재개발 정책의 현황과 과제.
 손유미 외(2008). 새로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인재육성 발전 방안.
 홍영란(2009). 지역인재육성정책과 RHRD-Net 출범의 의의.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함.

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과 함께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변화 동향은 크게 ①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시범 운영기(2002~2003년), ②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기반 구축기(2004~2005년), ③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내실화 및 활성화기(2006~2007년), ④ 지역인적자원개발 전환기(2008년 이후)로 구분된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지역인재육성 정책 동향



자료: 최병학(2010). 전환기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 쟁점과 대안, 62쪽.

1)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시범 운영기(2002~2003년)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부산, 광주, 충북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 추진체제는 시도교육청이며,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데 주된 노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시범운영기의 정책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5월 29일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제6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시범지역 추진 및 「지원단」 구성·운영’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는 지역단위의 자율적 추진체제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와 추진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제시하였는데, 즉 시·도, 대학, 교육청, 노동청, 중소기업청 등의 추진기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초·중등학교, 청소년 단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시민단체, 도서관, 직업훈련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의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림 2-4]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운영기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예시



자료: 손유미 외(2009), 새로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인재육성 발전 방안, 13쪽.

이후 2008년 8월 26일에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정부는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인적자원개발관련 연구기관 등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2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부산, 광주, 충북의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로서 교육감보다는 시도지사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이후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시도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거 신설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기반 구축기(2004~2005년)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추진한 시기이다. 특히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하여 13개 광역시도에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제를 갖추는 데 많은 노력이 투입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서는 13개 시·도에 지자체,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청 등이 연계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가 구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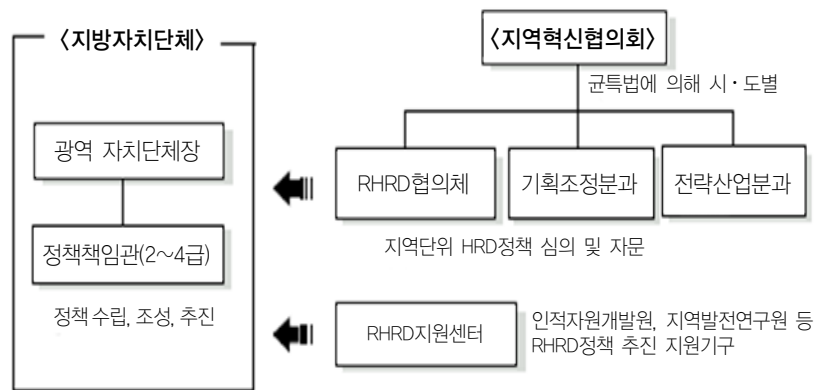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기반 구축기의 정책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1월 14일에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RHRD 추진체제 구축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13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지자체·대학·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청 등이 연계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구축하였다. 본 보고에서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사업 총괄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협의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을 자체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13개 시·도(수도권 제외)를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청 등이 연계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기구 즉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5년 6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총괄국의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계획(안)' 보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심점으로 설정하고, 사업기획, 평가 등에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현실화하며, 지자체, 교육청, 노동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체제를 제시하였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기반 구축기의 주요 성과는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실제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에서도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담당부서 신설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었다.

[그림 2-5] 지역인적자원개발추진기반 구축기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자료: 홍영란(2009). 지역인재육성정책과 RHRD-Net 출범의 의의, 30쪽.

3)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내실화 및 활성화기(2006~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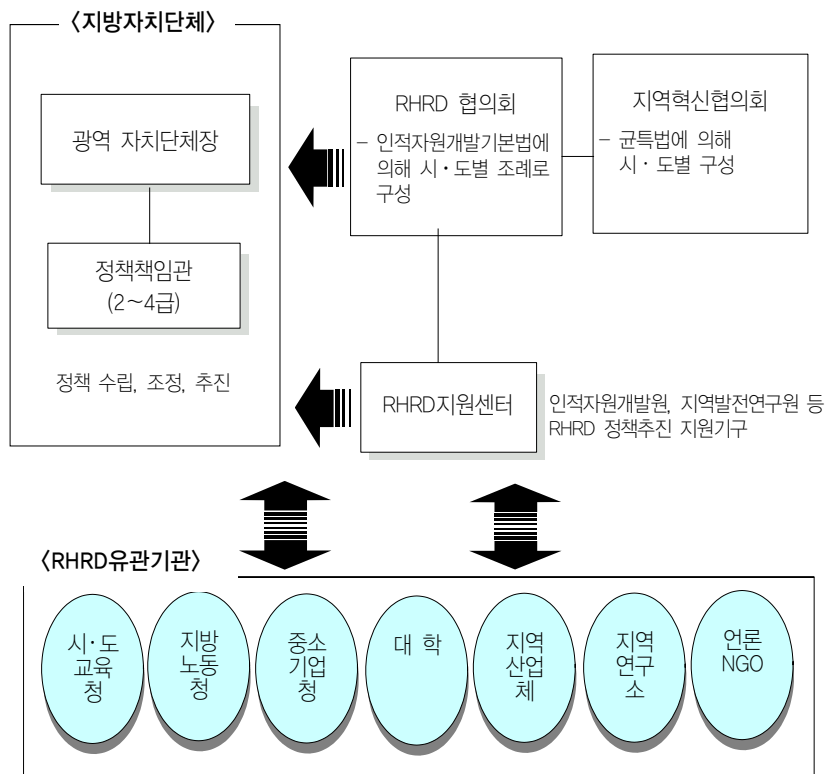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내실화 및 활성화기는 우수사업을 발굴하여 확산하는 데 중요한 초점을 두는 한편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이 되도록 유도한 시기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내실화 및 활성화기의 정책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부터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예산을 1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 추진계획 및 의지,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역별 사업비를 차등지원하였으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5~20%의 대응투자를 요구하였다.

이후 2007년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의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007년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계획(안) 보고서에서는 2005년 6월에 제시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계획(안)’에서

제시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영역에 기초하여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2-6]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내실화 및 활성화기의 시·도별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자료: 손유미 외(2009), 새로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인재육성 발전 방안, 18쪽.

특히 2007년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협력사업(R-pack)과 NHRD-RHRD연계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응투자를 하도록 요구하여 2007년에는 5~20%, 2008년에는 20%

의 대응투자를 유도하였다.

4) 지역인적자원개발 전환기(2008~현재)

지역인재육성 추진기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서 지역인재육성 사업으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의 추진방향이 변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사업을 재설계하는 시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의적 지역 인재육성 사업 발굴·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공모제로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지역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평가에 근거한 사업선정 과정을 정착시킴으로써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시·도별 균등배분(1/N)을 축소하고 자율·경쟁 공모를 확대하였는데, 공모사업 비율은 2007년 30억 원에서 2008년 74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58개 사업 중 선정평가를 거쳐 33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우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우수사례를 타 지역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인재육성정책과 지역인재육성정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인재육성정책이 국가 수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3절 지역인재육성 관련 법령

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에 제정된 법이다. 동 법에서는 정부는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며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인적자원개발의 기본방향,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인력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는 지역인재육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설치,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지정,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지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관련하여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의 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항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설치 규정과 협의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에서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과 필요한 경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에서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과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표 2-4>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지역인재육성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조항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함 	제4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해야 함 • 기본계획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제5조
국가인적자원 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지역인적자원 개발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음 • 협의회에서는 ①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 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 3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 	제10조
인적자원개발 평가센터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제12조

<표 계속>

구분	내용	조항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14조

주: 1)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제시된 내용 중 지역인재육성과 관련된 내용만 요약하여 제시
 2) 지역인재육성과 관련성이 높은 법령 내용은 밑줄로 표시함

한편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총리제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폐지되면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동 법 및 시행령의 폐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조치결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평가 등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수단적 규정들로서 ‘정부조직법’상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및 국비 등 지원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표 2-5>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안에 따른 조치결과

내용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폐지 반대, 개정 또는 대체입법 제정 필요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센터 운영, 국비 등 지원근거 약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반영 -RHRD센터 지원을 포함한 지역인재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2조) 및 평생교육법(제16조)에 근거하여 추진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제10조(인적자원개발책임관의 지정)의 폐지 반대 -RHRD센터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조항 존속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반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2조) 및 평생교육법(제16조)은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표 계속>

내용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재발굴 및 육성사업의 수행·지원 근거로서 대체입법 제정 건의 -조직, 인력, 예산지원(국비+시비)의 근거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의 유지 필요 같은 법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특정평가), 제10조(인적자원개발책임관의 지정), 제11조(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유통 및 활용)를 지역으로 한정하는 수준에서 근거 존치 또는 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반영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가능 미반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에 근거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적자원정책의 지속추진을 위해 전부폐지보다는 법령개정 필요 -폐지가 불가피할 경우, RHRD센터 지정 및 지역인재육성사업 관련사항을 평생교육법에 반영하여 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반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2조) 및 평생교육법(제16조)은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폐지 재고 필요 -국가차원의 인적자원정책 총괄·조정기능 폐지를 이유로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근간을 약화시켜서는 아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반영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평가 등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수단적 규정들로서 정부조직법상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가 불가피 -지역인재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평생교육법에 지원근거 존속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으로 2009년 4월 22일에 일부 개정된 법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지역인재육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지역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4조(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에서는 지역발전계획에 지역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에서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표 2-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인재육성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조항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함 	제3조
지역발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함 • 지역발전계획에는 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제4조
지역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해야 함 • 시책에는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산학연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제12조

주: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제시된 내용 중 지역인재육성과 관련된 내용만 요약하여 제시
 2) 지역인재육성과 관련성이 높은 법령 내용은 밑줄로 표시함

3.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 2009년 5월 8일 일부 개정된 법이다. 평생교육법에 제시된 지역인재육성 관련 내용으로는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표 2-7> 평생교육법의 지역인재육성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조항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함 	제5조
경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제16조

주: 1) 평생교육법에 제시된 내용 중 지역인재육성과 관련된 내용만 요약하여 제시
2) 지역인재육성과 관련성이 높은 법령 내용은 밑줄로 표시함

제4절 시사점

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정책 및 법령에 대한 고찰 결과를 토대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대비한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역인재육성사업은 2002년에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및 국비 등의 지원 근거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시에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 근거 및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아직까지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인재육성사업과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자립하여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방안으로는 타 법령 대체방안과 대체입법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주요 법령을 포함한 신규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규 대체입법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평생교육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안에 따른 조치 결과,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 국비 지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의 근거가 평생교육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를 위해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원근거에 대한 법령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 책임관 지정,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제4조, 5조, 7조, 10조, 12조에 제시된 지역인재육성과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서, 향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법령 정비방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는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의 주요 추진주체, 제한점, 효과,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령 정비 시에는 기존의 법령과의 중복성, 추진주체의 의지, 현실성 등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2.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역할·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지역인재육성의 개념, 정책 및 법령에 대한 고찰 결과를 토대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육성의 학문적, 정책적, 법령상 개념 정의에서 강조되는 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있다. 따라서 지역인재육성 정책 및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입장에서는 지역인재육성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센터 운영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발전정책에서는 일자리, 삶의 질, 경쟁력있는 지역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가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예산 지원, 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센터 자체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 3 장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

강일규 · 현영섭

제1절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1. 사업 추진방향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기본방향은 경쟁 공모 시스템 유지 및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RHRD 정책역량 강화와 현장중심의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2010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세부 추진방향은 <표 3-1>과 같이 균등배분 기본사업비 감액, 선택과 집중 강화, 지자체의 역량 및 책무성 강화, 전문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평가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표 3-1>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방향

추진방향	주요 내용
균등배분 기본사업비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총액 감소(△20%)에 따른 기본사업비 감액 • 정책연구·조사 중 필수 과제 지정
선택과 집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간 경쟁시스템 확보 및 성공사례 창출 • 현장수요 기반 공모사업 중심으로 개편

<표 계속>

추진방향	주요 내용
지자체의 역량 및 책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육성 담당자의 정책역량 강화 • 지역인재육성 유공자 표창 실시 •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전문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평가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중심의 평가 수행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15~16쪽 재구성.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본사업비의 감액 및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업비 총액 규모가 2008년 100억 원에서 2009년 80억 원, 2010년 40억 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시·도별로 균등배분을 하는 기본사업비를 2008년 2억 원에서 2009년 1.6억 원, 2010년 1억 원으로 감액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정책연구·조사 중 필수 과제를 지정하였다. 즉, 지역인재육성 자료 DB화 및 업데이트, 시·도 공동사업(사업 평가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정책연구 조사사업 중 전국단위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시·도 공통과제로 정책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간 경쟁시스템 확보 및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서 단년도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 공모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은 계속 지원하여 지역의 특성화 모델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다만 공모사업의 계속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08년 선정 공모사업의 경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하여 20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현장수요 기반 공모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2008년 국정과제 기반사업은 소관부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지자체의 정책역량 및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한 실적을 토대로 총체적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인재육

성 업무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업무 담당자의 사기를 앙양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사업 목표에 미달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사업은 퇴출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의무화하여 센터운영비 전액과 공모사업은 국고지원금의 50%를 대응투자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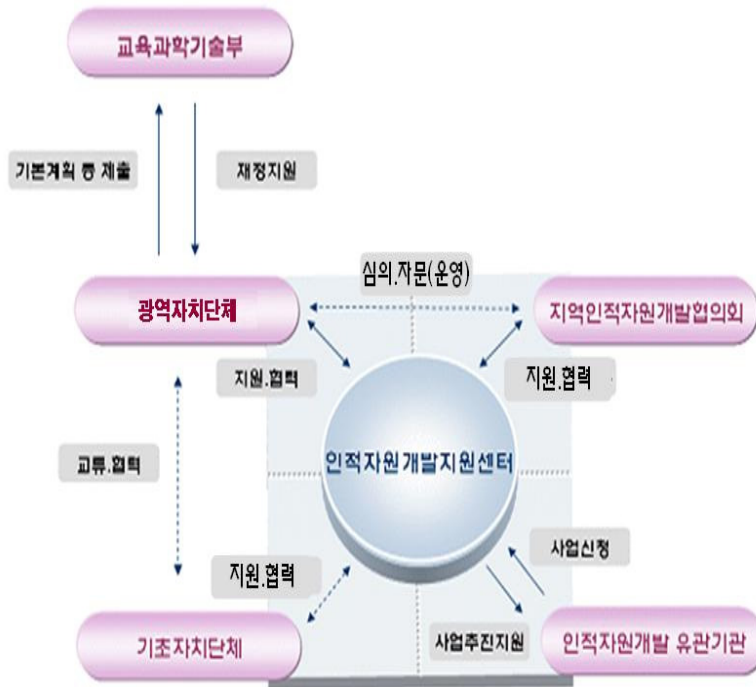
넷째, 전문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평가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선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평가를 병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방식의 과정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2010년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2. 사업 추진체제

지역인재육성 사업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점이 되어 사업을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역내 교육청,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체계(network)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체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사업제안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업 선정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림 3-1]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 체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12쪽.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및 지자체, 지역인적자원지원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 역할은 다음과 같다(<표 3-2> 참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선정,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담당하며, 시·도 및 지자체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사업제안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RHRD 센터)는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기본사업비 집행을 담당하며,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은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공모사업, 중간점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표 3-2>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지자체	RHRD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 사업선정 • 예산지원 • 중간점검평가 •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 추진실적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조사 • 시도 균등지원 기본사업비 집행 • 교과부, 직능원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평가 • 중간점검평가 • 추진실적평가 • 추진실적분석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17쪽.

3. 사업 대상 및 영역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대상은 학령인구 및 성인을 포함한 전 지역 주민이며(현영섭 외, 2008),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실질적인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의 주민으로, 이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분야 및 계층 간 균형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설정된 대상이다. 2008년 이후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기초가 지역의 균형발전에서 지역의 산업경쟁력 확보 및 인재양성으로 변화하면서, 사업 대상이 지역 주민, 지역 전문계고 및 대학 재학생, 지역 여성인재, 지역 신산업 인력 양성 대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영역은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과 활용,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기반 구축의 4가지 범주로 구성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현영섭 외, 2008). 인적자원 양성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 및 학습과 관련된 영역으로,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평생학습이 포함되며, 인적자원 배분과 활용은 양성된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여 취업을 하는 인력의 과정과 관련된 영역으로, 취업, 인력수급,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고용정책이 포함된다. 사회적 자본 형성은 지역의 문화나 풍토의 구축과 관련된 영역으로 인식전환, 신뢰구축 등 사회·문화 환경 형성이 포함되며, 기반구축은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추진 주체를 형성하는 영역으로 DB구축, 네트워크, 조직, 인력, 제도, 연구 등의 인프라가 포함된다.

<표 3-3> 지역인재육성 사업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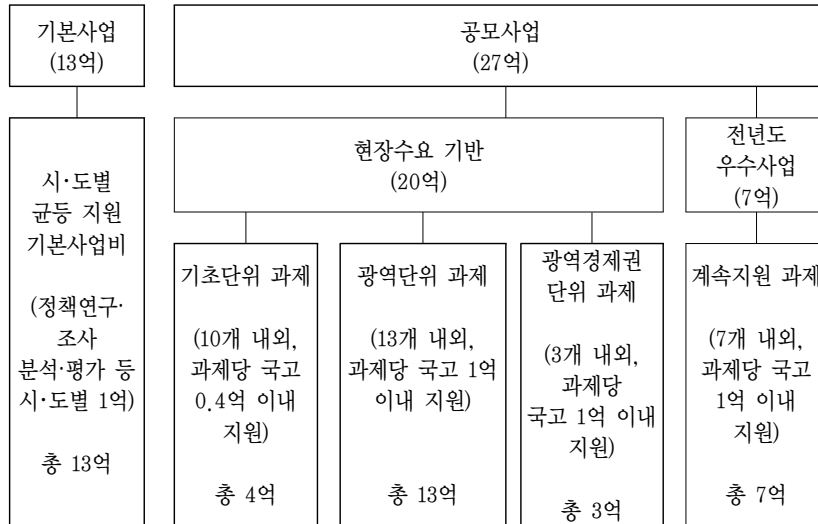
영역	세부 영역
인적자원 양성	•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평생학습 등
인적자원 배분·활용	• 취업, 인력수급,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고용정책 등
사회적 자본 형성	• 인식전환, 신뢰구축 등 사회·문화 환경의 형성(Social Capital)
기반구축	• DB구축, 네트워크, 조직, 인력, 제도, 연구 등 인프라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12쪽.

4. 사업 구성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은 기본사업과 공모사업으로 구성된다. 기본사업은 시도별로 균등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와 시·도 공동사업에 총 13억 원이 지원된다. 공모사업은 2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현장수요 기반 사업에 20억 원 전년도 우수사업에 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현장수요 기반 사업은 기초단위 과제, 광역단위 과제, 광역경제권 단위 과제로 구성된다.

<표 3-4> 2010년 지역인재육성 사업 구성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17쪽.

가. 기본사업

기본사업은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와 시·도 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인재개발 관련 정책기획을 위한 기본 연구·조사, 지역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간담회 등 네트워크 구축, 인재개발 관련 지역별 기초통계 수집·분석, 기구축된 DB 업데이트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연구·조사의 필수과제로는 지역별 비교가능한 인적자원개발 지표/통계 조사, 신성장 동력산업 및 녹색산업과 지역인재개발 실태 조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차년도 지역특화 인재육성사업 사전 조사 연구가 이루어진다.

시·도 공동사업은 총 1억 9천5백만 원이 지원되며, 공모사업의 선정, 과정, 최종성과 평가, 지자체, 교육청, 센터 공동 워크숍 및 중간보고회 개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총체적 성과분석, RHRD-Net 운영, 2009년도

추진 성과보고회 개최, 시·도 공동사업 운영 경비 등으로 운영된다. 한편 대응투자자의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시·도센터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된다.

<표 3-5> 2010년 기본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개발 관련 정책기획을 위한 기본 연구·조사 • 지역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간담회 등 네트워크 구축 • 인재개발 관련 지역별 기초통계 수집·분석, 기구축된 DB 업데이트 • 연구·조사 필수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비교가능한 인적자원개발 지표/통계 조사 -신성장 동력산업 및 녹색산업과 지역인재개발 실태 조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차년도 지역 특화 인재육성사업 사전 조사 연구
시·도 공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소요예산 : 195백만 원 (시·도당 15백만 원 부담) • 공모사업의 선정, 과정, 최종성과 평가 (65백만 원) • 지자체, 교육청, 센터 공동 워크숍 및 중간보고회 개최 (60백만 원)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총체적 성과분석 (30백만 원) • RHRD-Net 운영 (15백만 원) • 2009년도 추진 성과보고회 개최 (15백만 원) • 시·도 공동사업 운영 경비 : 10백만 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18쪽.

나. 공모사업

공모사업은 현장수요 기반 사업과 계속지원 사업(전년도 우수사업)으로 분류되며, 현장수요 인력양성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현장수요 기반 사업은 단위 지역의 특화 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 통합 도모를 목표로, 기초단위 과제, 광역단위 과제, 광역경제권 단위 과제에 총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수요 기반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며, 대응투자 비율은 5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계속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 중 실적평가가 우수한 사업을 계속 지원하여 지역의 특성화 모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7개 내외의 과제에 총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3-6> 2010년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현장수요 기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 지역의 특화 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사회적 소외계층 중심)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 통합 도모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 관련 유관기관간 네트워킹과 단위사업 내통합적 연계 강조 • 사업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단위 : 시·도별 2개 과제 신청 -광역단위 : 시·도별 2개 과제 신청 -광역경제권이 사업단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개 과제 추가 신청 가능 • 신청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단위 : 과제당 국고지원 최대 0.4억 원 이내 -광역단위 : 과제당 국고지원 최대 1억 원 이내 -광역경제권 : 과제당 국고지원 최대 1억 원 이내 • 선정 평가요소(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관 범위 및 기관장 리더십, 대응투자 규모 등 사업추진 의지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50%) -지역요구 반영 및 지역발전 기여도(20%)
계속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수 : 7억 원 • 지원 과제수 : 7개 과제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사업 최종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지원과제 수 증감 -총 사업비 축소로 지원액 감액 • 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도 사업 평가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는 교과부에서 최종 결정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19~20쪽.

5. 사업 운영 현황²⁾

1) 사업 신청 현황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에는 총 13개 시·도에서 50개 사업을 신청하였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가 3개, 대구광역시가 4개, 광주광역시가 4개, 대전광역시가 4개, 울산광역시가 4개, 강원도가 4개, 충청북도가 3개, 충청남도가 5개, 전라북도가 4개, 전라남도가 4개, 경상북도가 4개, 경상남도가 3개, 제주특별자치도가 4개의 사업을 각각 신청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기초단위 사업에 21개, 광역경제권단위 3개 사업 포함 광역단위 사업에 29개 사업을 신청하였다.

<표 3-7> 지역별·사업별 사업 신청 현황

지역명	기초 단위	광역 단위	계(지역)
부산광역시	0	3*	3
대구광역시	1	3*	4
광주광역시	2	2	4
대전광역시	2	2	4
울산광역시	2	2	4
강원도	2	2	4
충청북도	1	2	3
충청남도	2	3*	5
전라북도	2	2	4
전라남도	2	2	4
경상북도	2	2	4
경상남도	1	2	3

<표 계속>

2) 강일규 외(2009). 지역 인재개발 정책의 현황과 과제.
 채창균 외(2010).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함.

지역명	기초 단위	광역 단위	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2	2	4
계(사업별)	21	29	50

주: * 해당 시도가 주관하는 광역 경제권 사업 1개 포함
 자료: 채창균 외(2010).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평가, 25쪽.

한편 공모사업 분야별 신청액은 기초단위 사업에 2,644백만 원, 광역단위 사업에 5,395백만 원 등 총 8,039백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투자 비율은 기초단위 사업에 55.45%, 광역단위 사업에 45.91%에 해당하였다.

<표 3-8> 사업 분야별 신청액 및 대응투자비율

(단위: 백만 원, %)

사업 분야	신청액	대응투자액	대응비율 (신청액 대비)
기초 분과	2,644	1,466	55.45
광역 분과	5,395	2,477	45.91
계	8,039	3,943	49.05

자료: 채창균 외(2010).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평가, 25쪽.

2) 사업 선정 현황

2009년 지역인재육성 사업은 지자체와 각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부터 제안을 받아 선정이 되었다. 서면평가 등을 통해 공모사업의 비중을 높였다. 단위 지역의 특화 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통한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사회적 소외계층 중심)의 역량강화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 관련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와 단위사업내 통합적 연계 강조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총 50개 신청사업 중, 기초단위 사업 14개, 광역단위 사업 19개 등 총 3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표 3-9> 사업 분야별 선정 현황

사업 분야	신청건수	선정건수	비율
기초 분과	21	14	66.7%
광역 분과(광역 경제권 포함)	29	19	65.5%
총계	50	33	66.0%

자료: 채장균 외(2010). 2009년 지역인재육성사업 평가, 28쪽.

2009년 사업에서는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녹색뉴딜과 관련 사업내용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기초 자율사업에서 경북 봉화의 ‘백두대간 그린투어 숲 문화해설가 양성사업’과 제주도의 ‘Green Up 지역 만들기 인재육성사업’이 그 예이다. 광역 자율사업에서는 충북의 ‘반도체, 태양광 기반기술 인재육성사업’, 전북의 ‘탄소경량화 소재/부품/제품 설계 및 신뢰성 평가 전문가 육성사업’, 부산의 ‘해양수산 IT융합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강원도의 ‘관광레저 중사인력양성사업’, 경북의 ‘경상북도 레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사업’이 간접적이지만 녹색사업과 연관을 가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표 3-10> 기초 자율 공모사업 선정 결과

(단위: 백만 원)

지역	과제명	국고 신청액	국고 지원액	의무대응 투자액
전남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문자원봉사자 인력양성 <여수>	150	150	60
강원	횡성한우 명인 만들기 사업 <횡성>	150	150	60
울산	울산시 동구, 북구 제조업 고령 최직자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인재양성사업 <동구, 북구>	150	135	54
전북	군산 근대문화 전문인력 양성 <군산>	60	60	24
광주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제병전문인력 양성 project <동구>	150	135	54

<표 계속>

지역	과제명	국고 신청액	국고 지원액	의무대응 투자액
경북	신라, 유교 문화권 글로벌 문화브랜드화를 위한 culture teller 양성사업 <안동>	112	100	40
광주	남도식문화 1인 기업가 창업리더 육성사업<북구>	150	135	54
경북	백두대간 그린투어 숲 문화해설가 양성사업 <봉화>	100	90	36
제주	Green Up지역 만들기 인재육성사업 <제주시>	150	95	38
대구	아동교육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북구>	87	60	24
충북	신성장동력 U-헬스케어 인재양성사업 <옥천>	90	60	24
경남	골프산업 2G 전문인력 양성사업 <양산>	110	70	28
대전	결혼 이주여성 직업능력 향상사업 <동구>	110	47	19
충남	Nb-RHRD을 통한 아산시 창의적 지역 인재육성 개발 사업 <아산>	150	60	24
합 계			1,347	539

주: 신규 공모 사업별 지원액

자료: 강일규 외(2009). 2009년 지역 인재개발 정책의 현황과 과제, 108쪽.

<표 3-11> 광역 자율 공모사업 선정 결과

지역	과제명	국고 신청액	국고 지원액	의무대응 투자액
경남	로봇랜드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50	150	60
전북	탄소경량화 소재/부품/제품 설계 및 신뢰성 평가 전문가 육성	200	200	80
전남	해양레저장비산업 인재육성사업	200	200	80
대전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육성	200	200	80
대구	융·복합형 의료기기 인력양성사업	183	183	73
부산	해양수산 IT융합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00	200	80

<표 계속>

지역	과제명	국고 신청액	국고 지원액	의무대응 투자액
제주	'21세기제주 블루골드' 물 자원 산업화를 위한 인재육성사업	200	200	80
경남	선박검사 기술자 양성사업	70	70	28
충남	인재육성을 통한 서해안 희망찾기 프로젝트	200	140	56
충북	반도체, 태양광 기반기술 인재육성사업	200	140	56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형 취업, 창업 프로젝트	200	140	56
경북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GB 60+ 인재육성사업	200	110	44
강원	관광레저 종사인력양성사업	160	90	36
경북	경상북도 레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사업	200	80	32
부산	부산, 큐슈지역 초광역 전문인력 양성 및 인재교류사업	200	80	32
울산	퇴직 교원을 활용한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탐방 해설사 양성사업	200	80	32
	합 계		2,263	905

자료: 강일규 외(2009). 2009년 지역 인재개발 정책의 현황과 과제, 109쪽.

<표 3-12> 광역경제권 공모사업

지역	과제명	국고 신청액	국고 지원액	의무대응 투자액
부산	동남권 지역특화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200	200	80
대구	대구경북 IT융합 지능로봇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138	110	44
충남	충청권 국방산업 인재육성 및 교육, 고용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	200	100	40
	합 계		410	164

제2절 지역인재육성사업 성과 및 문제점

1. 지역인재육성사업 성과

가. 지자체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육성사업에 투입되는 지자체의 대응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비 지원액인 100억 원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대응투자 비율은 2006년 21.6%(23억 원), 2007년 50.2%(62억 원), 2008년 63.9%(63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국비가 80억 원으로 줄었지만, 대응투자는 6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응투자 비율은 87.2%에 달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전년도 대비 50%가 감소한 40억 원이 국비로 투입된 관계로 지자체의 대응투자 2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지방비는 대응투자 50% 이상 의무화 기준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60.4%가 확보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지역인재육성지원을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가장 큰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13> 연도별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예산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

연도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계	대응 투자 비율
'04	-	-	-	-	-	-	-	-	-	-	-	-	-	-	-
'05	-	-	-	-	-	-	1,530	-	530	-	-	-	-	2,060	41.2
'06	120	53	80	39	80	-	1,010	100	570	39	65	158	-	2,314	21.6
'07	495	300	280	165	280	269	2,021	160	629	165	260	688	563	6,275	50.2

<표 계속>

연도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계	대응투자비율
'08	279	300	660	140	190	129	1,431	354	693	330	299	538	1,047	6,390	63.9
'09	300	464	314	244	241	259	1,936	454	688	310	363	349	1,056	6,978	87.2
'10	130	90	130	130	50	50	150	50	333	140	130	150	882	2,415	60.4
계	1,324	1,207	1,464	718	841	707	8,078	1,118	3,443	984	1,117	1,883	3,548	26,432	54.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업무자료(2010. 4. 12).

최병학(2010). 전환기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 쟁점과 대안, 63쪽.

나. 지자체의 지역인재육성 조례 제정

지역인재육성사업 운영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른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례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적자원개발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었으며, 조례에서는 지자체 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인적자원개발협의회 : 설치, 기능, 구성,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설치, 기능, 운영위탁 등, 인적자원개발기금 설치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재육성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 및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표 3-14>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례 현황

지역	조례 및 주요 내용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미래인재 육성 및 지원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인재란 도 출신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를 의미 -미래인재 육성 차원에서 기금을 약 100억 원 이상 달성(해마다 약 20여 명 규모로 선발) • 강원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 강원도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표 계속>

지역	조례 및 주요 내용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인적자원개발협의회 : 설치, 기능, 구성, 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설치, 기능, 운영위탁 등, 인적자원개발기금 설치 등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 조례 여성인적자원개발조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교육지원계획 수립, 지역인재양성 관련 협의회 구성 등 내용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심의,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심의,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정 등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주: 1) 울산, 전남 :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례 없음
 2) 기관용 설문지에 응답한 시·도만을 제시한 결과임

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센터와 협의회 설치

전국 13개 시·도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RHRD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지사 주관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경우 통합 운영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도지사 주관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강원과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시·도의 경우 지역혁신협의회 산하 분과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센터 및 협의체 구축은 지역 인

재육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 지역인재육성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로 지역인재육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부서, 공공기관, 민간기관,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인재육성 추진을 통해 사업 및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계, 공공기관으로는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광주디자인센터, 민간기관으로는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한국광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 대학으로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등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5>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인재육성 관련 기관 예시

지역	관련 기관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 전략산업기획단, 평생교육정보관, 인재개발원, 여성정책개발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노동청, 대한상공회의소 강원인력개발원, 강원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 대학 : 한국폴리텍3대학 전문계고등학교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계 공공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광주디자인센터 등 민간기관 :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한국광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 등 대학 :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등

<표 계속>

지역	관련 기관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 대전시청(기획관실 평생교육계) 5개 구청 평생교육과 • 공공기관 : 대전지방노동청(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대덕특구지원본부, 대전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 대학 : 각 대학교 평생교육 기관

주: 기관용 설문지에 응답한 시·도만을 제시한 결과임

마. 지역의 전략산업 및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

지역별로 전략산업 및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인재육성의 영역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도별로 지역 전략산업 및 주민 수요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책 사각지대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발굴하며, R-pack 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시·도민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총체적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그 동안의 지역 인재육성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 지원을 지방에서 받아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인재를 육성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부가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역인재육성 지원이 지방의 대응 자금을 유도하고 지역 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발생시킴으로써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인재육성사업 문제점

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문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총리제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폐지되면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의 폐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후속보완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뚜렷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향후 추진 가능성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로 센터의 존립 근거 약화, 지자체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불필요한 조직으로 인식하는 현상, 사업 연속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나. 지역인재육성 담당 인력 부족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존위의 불안정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인력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의 지역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인식의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많은 시·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지자체 사무로 인식하지 못하여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국비 지원의 감소로 인력 정원이 줄어들거나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으로 인해 센터원의 처우 및 신분보장 열악하고, 센터원의 전담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 부족,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나 자체연수 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 지역인재육성 전담 조직 축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조직개편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는 평생교육직업국 평생교육정책과의 단위업무로 사무분장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는 과거 인적자원정책본부(2008.

7. 18) 내의 대외협력팀이나 예전에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전담했던 잠재인력정책과에 비해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행정조직적 기반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정책기관 사업영역의 축소로 인한 정치권의 지지기반도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최병학, 2010).

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예산 감소

기본적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 국비를 투입해서 지역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이를 토대로 종국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중·장기 계획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고지원에 대응하는 지방투자비의 괄목할만한 신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즉,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지방비를 투입하기 어려운 지방예산편성의 현실이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안정적 예산확보 난항 및 축소편성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사업비 배분방식과 관련한 공모사업에 따른 지역별 예산편차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현안보다는 ‘단기적 성과성 사업’에 치중한다는 측면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업단(대학 및 기관단체 등)의 경우, 국고 의존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대응투자는 낮다는 지적도 계속 일고 있다(최병학, 2010). 특히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경우 2008년 100억 원에서 2009년 80억 원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40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제3절 시사점

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토대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 주체별 역할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계획수립, 사업선정, 예산지원, 중간점검평가, 사업평가의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소관 부처로서,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및 효과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있어서도 사업의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인재육성과 관련하여 구축된 조직 및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지역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체계 구축, 센터와 협의회 설치,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반 마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조직 및 기반을 통해 향후 지역의 전략산업 및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폐지될 경우에는 현재까지 구축된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직 및 기반이 사라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2.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역할·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토대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현장수요 인력양성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기본사업에서 공모사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현장수요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 즉 단위 지역의 특화 전략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도모가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감소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2008년 100억 원, 2009년 80억 원, 2010년 4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국비 지원을 제외한 지자체의 대응투자자금에 대한 확보와 자체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 확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향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폐지될 경우 국비 지원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센터의 예산 확보를 위한 자체 사업 추진 및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셋째,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평가에 대비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방향에 따르면 전문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평가체제 구축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예산 지원의 경우에도 평가를 통해 전년도 우수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를 강화하고, 향후 예산 확보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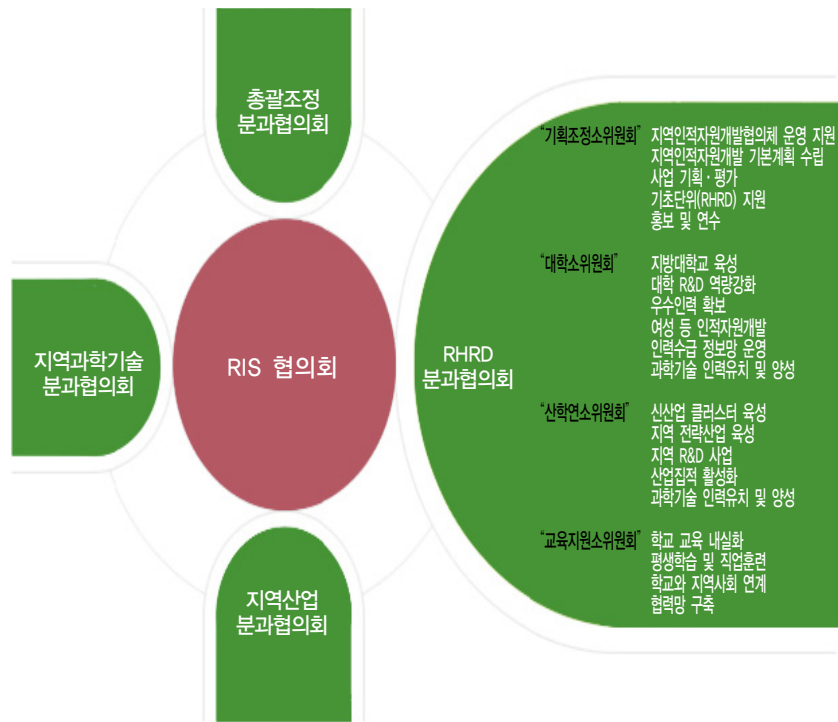
이상돈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및 운영체제

1.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체제는 RIS 협의회를 중심으로 총괄조정분과 협의회, 지역과학기술분과협의회, 지역산업분과협의회, RHRD분과협의회로 구성된다. 이 중 RHRD분과협의회는 기획조정 소위원회, 대학 소위원회, 산학연 소위원회, 교육지원 소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획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지원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기획 및 평가, 기초단위 RHRD 지원, 홍보 및 연수를 담당한다. 대학 소위원회는 지방대학교 육성, 대학 R&D 역량 강화, 우수인력 확보, 여성 등 인적자원개발, 인력수급 정보망 운영,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양성을 담당한다. 또한 산학연 소위원회에서는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지역 R&D 사업, 산업집적 활성화, 과학기술 인력유치 및 양성을 담당하며, 교육지원 소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 내실화,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협력망 구축을 담당한다.

[그림 4-1]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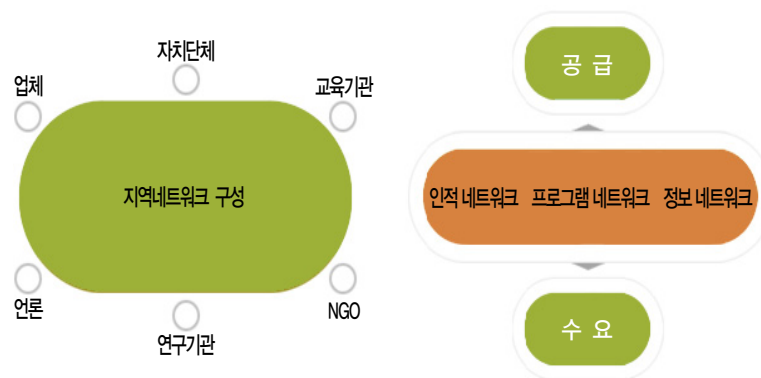


자료: 전국 RHRD 홈페이지(<http://www.rhrd.kr/>)

한편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각 시도의 관련 연구기관 등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① 지역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②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각종 정보의 생산·유통·활용 등을 포함하는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센터로서의 기능, ③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조정·분석·평가지원 및 기초연구 조사, ④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무 추진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전국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다. 전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 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협의 및 권고 사항,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자체사업 평가, 그밖에 의장이 부의한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회 구성 목적은 지역인적자원의 개발·배분·활용을 목적으로 관련된 거버넌스체제의 구축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역량의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에 있으며, 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체제 구축, 지역의 다양한 인적자원 수요 및 공급분야 네트워크 형성, 협의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전략 도입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전반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인적, 정보, 프로그램의 다양한 요소가 결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2] 전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방향



자료: 전국 RHRD 홈페이지(<http://www.rhrd.kr/>)

2. 지역인적자원개발 운영체제

2002년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들이 설치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인재양성’ 혹은 ‘인적자원개발’ 관련 조직기구의 신설 및 확대 개편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 지자체별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행정조직 현황

지자체	전담 행정조직
강원	기획관실 교육협력팀
경남	정책기획관실
광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전남	행정과
대구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경제기획담당)
경북	행정지원국 인재양성팀
대전	국제교육 담당관실
부산	경제산업실 교육과학기술과
울산	기획관리실 기획관실
전북	기획관리실 인재양성과
제주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충남	교육협력법무담당, 평생교육 T/F
충북	정책기획관실

자료: 손유미 외(2008), 새로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인재육성 발전 방안, 25쪽.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현재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2003. 1), 광주광역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2005. 6),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

한 조례(2008. 3),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2008. 6) 등 총 4개 지역이다. 충청북도, 제주도, 전라북도의 경우에 지역인적자원개발 조례안은 작성된 상태이나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및 지역인적자원개발보다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의 지역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로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김진덕, 2008).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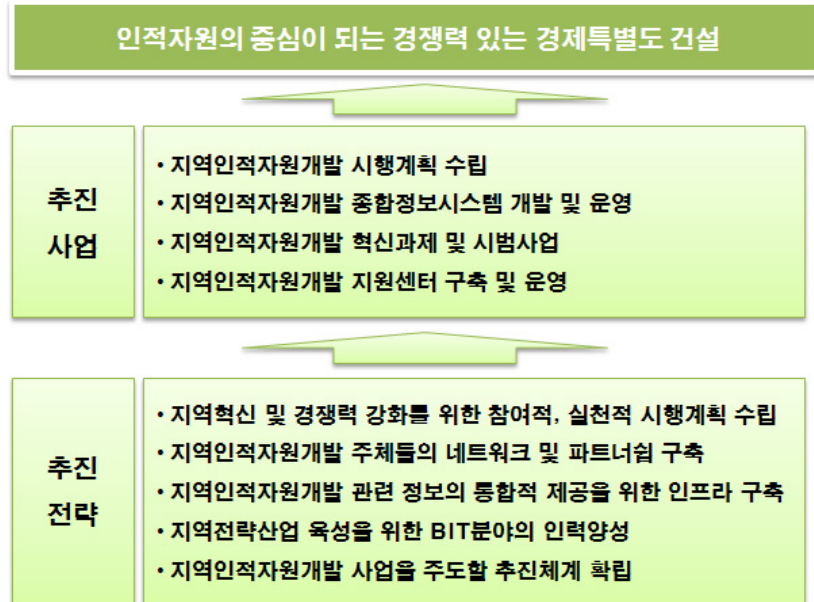
1.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가. 비전 및 주요기능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상응하는 지역 수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지원기구 설치를 통해 지역단위에서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의 조기 구축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인적자원의 중심이 되는 경쟁력 있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비전으로 추진사업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지역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여적·실천적 시행계획 수립, 지역인적자원개발 주체들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BIT분야의 인력 양성,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할 추진체계 확립을 수립하였다. 또한 주요 추진사업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수립,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운영, 혁신과제 및 시범사업 수행,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3]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비전 체계



자료: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bhr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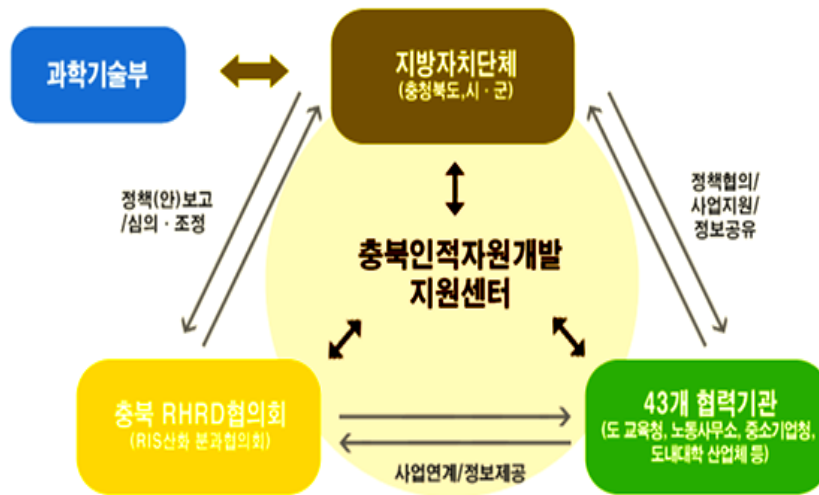
한편 충북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능은 ① 지역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②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각종 정보의 생산·유통·활용 등을 포함하는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센터로서의 기능, ③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조정·분석·평가지원 및 기초연구 조사, ④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주요 활동 지원 및 정책 개발, ⑤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업무 추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사업 추진체계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충북 RHRD협의회 및 43개

협력기관(도 교육청, 노동사무소, 중소기업청, 도내 산업체 등)과 경제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4-4]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체계



자료: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bhrd.or.kr/>)

참여주체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팀의 소관이며,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제도적 기반 구축, 행·재정적 지원, 정책 네트워크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충북 RHRD 분과협의회는 충청북도 조례 2792호인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학계, 산업체, 도의회, 연구원, 지방특별 행정기관 등의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역인재육성정책 총괄 심의·조정,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 창구 역할, 지역인재육성사업 선정·평가, 정책홍보 등을 담당한다. 협력기관 실무협의회는 43개 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자료 협조, 상호 정보 및 인력교류, 산학 협력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참여, 정책현안

과제 공동 대응, 양성인력의 배분, 활용을 위한 중개기능 참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센터장, 기획 및 연구인력, DB운영 인력, 네트워크 운영 인력을 포함한 전담인력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인재육성 기본 시행계획 수립,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세미나·워크숍 개최, 네트워크 운영, 협의회 지원 등을 담당한다.

[그림 4-5]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자료: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bhrd.or.kr/>)

다.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사업 추진목표는 충북의 인재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는 기초연구 및 실태조

사를 통한 지역인재육성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 도출, 지역인적자원개발지표 통계조사 및 DB구축을 통한 정책의사결정지원 강화, 지역내 인재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체계 운영 내실화, 워크숍, 성과보고회 등을 통한 정책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다양한 기획 및 연구조사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DB구축 및 운영을 통한 정책의사결정 지원 강화,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시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상호협력 및 정책연계 기반 확대, 정책 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 거점기관 역할 강화의 5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4-2>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구분	주요 내용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의 인재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인재육성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 도출 - 지역인적자원개발지표 통계조사 및 DB구축을 통한 정책의사결정지원 강화 - 지역내 인재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체계 운영 내실화 - 워크숍, 성과보고회 등을 통한 정책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기획 및 연구조사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 지역인재양성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조사 수행 • DB구축 및 운영을 통한 정책의사결정 지원 강화 - 인적자원개발 통계의 수집, 축적, 가공을 통한 정책의사결정 지원 •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유관기관 간 사업연계 및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한 정책적 효과 극대화 - 홍보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전 도민의 참여 확대 유도 • 시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상호협력 및 정책연계 기반 확대 - 국가 정책기조와의 연계 강화 및 공동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 정책 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 거점기관 역할 강화

자료: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bhrd.or.kr/>)

라. 사업 운영 현황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은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DB구축 및 운영,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시·도 공동사업, 센터 운영으로 구분된다.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사업으로는 충북지역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충북지역 산업인력 수급분석 및 개선방안, 충북평생학습진흥계획 수립, 통계로 본 충북의 인적자원경쟁력, 충북 인재개발/평생학습 백서, 신성장동력 산업·녹색산업 인재개발 실태분석 및 인력양성 방안, 지역 특화 인재육성사업 사전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DB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RHRD 지표 및 전문가인력 POOL 등의 DB를 구축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와 관련해서는 지역인재육성 세미나 개최, 공모사업 자체평가 워크숍, 정책간담회(포럼) 개최, 지역인재육성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도 공동사업으로 지역인재육성공모사업 평가, 협의회 워크숍, 전국 성과보고회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센터운영과 협의회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다.

<표 4-3>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운영 현황

구분	사업명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지역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충북지역 산업인력 수급분석 및 개선방안 • 충북평생학습진흥계획 수립 • 통계로 본 충북의 인적자원경쟁력 • 충북 인재개발/평생학습 백서 • 신성장동력산업·녹색산업 인재개발 실태분석 및 인력양성 방안 • 지역 특화 인재육성사업 사전조사
DB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 구축 및 업데이트(RHRD지표, 전문가인력POOL 등)

〈표 계속〉

구분	사업명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육성 세미나 개최 • 공모사업 자체평가 워크숍 • 정책간담회(포럼) 개최 • 지역인재육성사업 성과보고회 • 정책홍보(소식지 발간 등)
시·도 공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공동사업 추진(지역인재육성공모사업 평가, 협의회 워크숍, 전국 성과보고회 등)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운영 • 협의회 지원

자료: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bhrd.or.kr/>)

마. 사업 예산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도 사업비는 총 3.6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44.4%인 1.6억 원, 지자체부담금이 55.6%인 2억 원이었다. 사업별로는 센터 운영은 지자체부담금을 사용하였으며, 이외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였다.

<표 4-4>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소요예산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센터 운영	200,000	-	-	200,000	100.0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91,460	91,460	100.0	-	-
DB구축 및 운영	11,900	11,900	100.0	-	-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44,640	44,640	100.0	-	-
시·도 공동사업	12,000	12,000	100.0	-	-
계	360,000	160,000	44.4	200,000	55.6

자료: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bhrd.or.kr/>)

2. 광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가. 비전 및 주요기능

광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상응하는 광주지역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지원기구 설치를 통해 지역단위에서 인적자원개발 진체제의 조기 구축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광주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리, 활용 관련 주요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전담 조직으로서의 역할, 광주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및 시·도청 등 관계기관의 정책 역량을 감안하여 민간 전문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활용, 광주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주요 결정 및 사업 추진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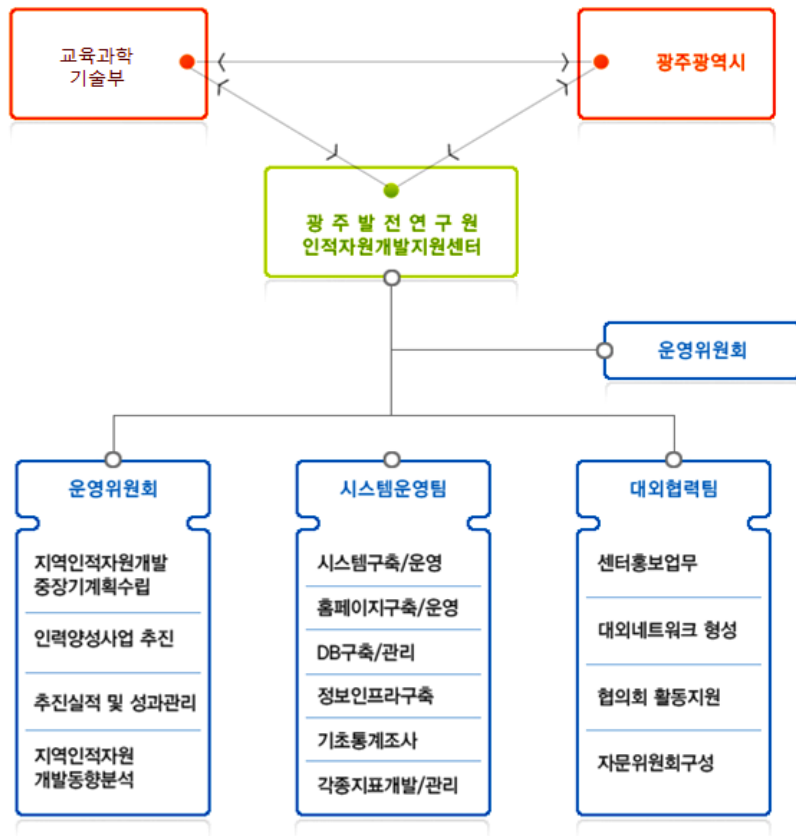
광주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능은 ① 광주의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총괄·조정 지원, ② 광주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③ 광주의 지역인적자원 관련 중앙정부 추진사업과의 연계·협력 및 창구 역할, ④ 광주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초조사·연구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 ⑤ 광주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⑥ 광주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⑦ 광주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홍보 및 추진지원, ⑧ 기타 광주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 및 업무수행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사업 추진체계

광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시스템운영팀, 대외협력팀으로 구성되

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인력양성 사업 추진,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 지역인적자원개발 동향 분석을 담당하며, 시스템운영팀은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DB 구축 및 관리, 정보인프라 구축, 기초통계조사, 각종 지표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대외협력팀은 센터홍보업무, 대외네트워크 형성, 협의회 활동지원, 자문위원회 구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6] 광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자료: 광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jhrd.net/>)

다. 사업 운영 현황

광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도 주요 사업은 계획수립, DB구축, 취업센터, 평가지표, 기타로 구분된다. 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 지역 인적자원개발 계획 로드맵, 광주광역시권역 금형산업 인력양성계획, 혁신주체적 관점에서 본 전라남도 고등학교 인적자원개발계획, RHRD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DB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인적자원 DB운영 실태 및 해외자료조사, 지역인적자원 DB 분류체계 및 모형 개발, 광주·전남인적자원개발 DB 구축 및 통합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취업센터와 관련해서는 광주권 취업정보종합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RHRD 평가 지표 개발 및 사업투자 실적 분석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그밖에 RHRD 홍보사업과 협의회 운영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표 4-5> 광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운영 현황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계획수립	광주/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 계획 로드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전남지역 인적자원개발 비전, 목표, 전략의 설정 •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추진주체별 로드맵 수립 •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구축 • 추진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광주광역시권역 금형산업 인력양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금형산업기술 및 금형수요 조사 • 지역내 금형 전문인력 DB 구축 • 금형산업기술 발전모델 개발 • 지역우수 금형산업인력개발 마스터플랜 작성
	혁신주체적 관점에서 본 전라남도 고등학교 인적자원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지역의 권역별 교육여건 현황 및 문제점 • 전남지역의 권역별 인적자원개발 및 고교 육성 방안 • 전남지역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혁신주체의 역할과 혁신체계 구축

<표 계속>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계획수립	RHRD 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 범위 및 방법 광주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정/보완 지역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의 영역별 핵심역량 및 핵심사업과제 도출 지역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의 영역별 핵심역량 및 핵심사업과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구축
DB구축	지역인적자원 DB운영 실태 및 해외자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구축된 지역인적자원 DB(통계, 인력, 산업DB) 운영실태 및 현황조사 지역인적자원 DB 사용자요구사항 조사/분석(인터뷰 및 설문 조사) 지역출신 해외 인적자원 자료조사 및 네트워킹 방안연구 지역인적자원 DB 수집 및 구축방안
	지역인적자원 DB 분류 체계 및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적자원 DB 범위 결정: 넓이, 깊이 지역인적자원 DB 분류체계 표준화: 표준 및 카테고리 설정 DB를 활용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지표 및 모형 개발 지역인적자원 DB 구축 5개년 마스터플랜 작성
	광주·전남인적자원개발 DB 구축 및 통합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전남인적자원 DB 분석·설계 및 구축(통합검색시스템 포함)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용자분석 및 통계시스템 포함)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용역 웹기반 프로젝트협업시스템 구축 서베이 및 분석시스템 구축 서버 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취업센터	광주권 취업정보종합 센터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권 취업정보종합센터 홈페이지 구축 분야별 기업의 수요와 공급인력 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 포털 구축 각종 취업정보 관련 정보 DB 구축 광주권 취업정보종합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구직자의 역량강화방안 도출 및 e-러닝 시스템 구축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표 계속〉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평가지표	RHRD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투자 실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평가지표 및 기법과 관련된 선행연구 사업의 투자성과 평가기법에 관련한 선행연구 지역인적자원개발계획의 실적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평가 및 투자실적 분석시스템 구축 및 활용
기타	RHRD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메일링 서비스, 정책자료 및 선행연구자료 제공 인적자원개발 홍보책자제작 센터브로셔1종, RHRD홍보 팸플렛 1종
	협의회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전남인적자원개발협의회 운영·지원 광주전남인적자원개발계획 자문위원회 운영·지원 광주전남인적자원개발 리더스 포럼 운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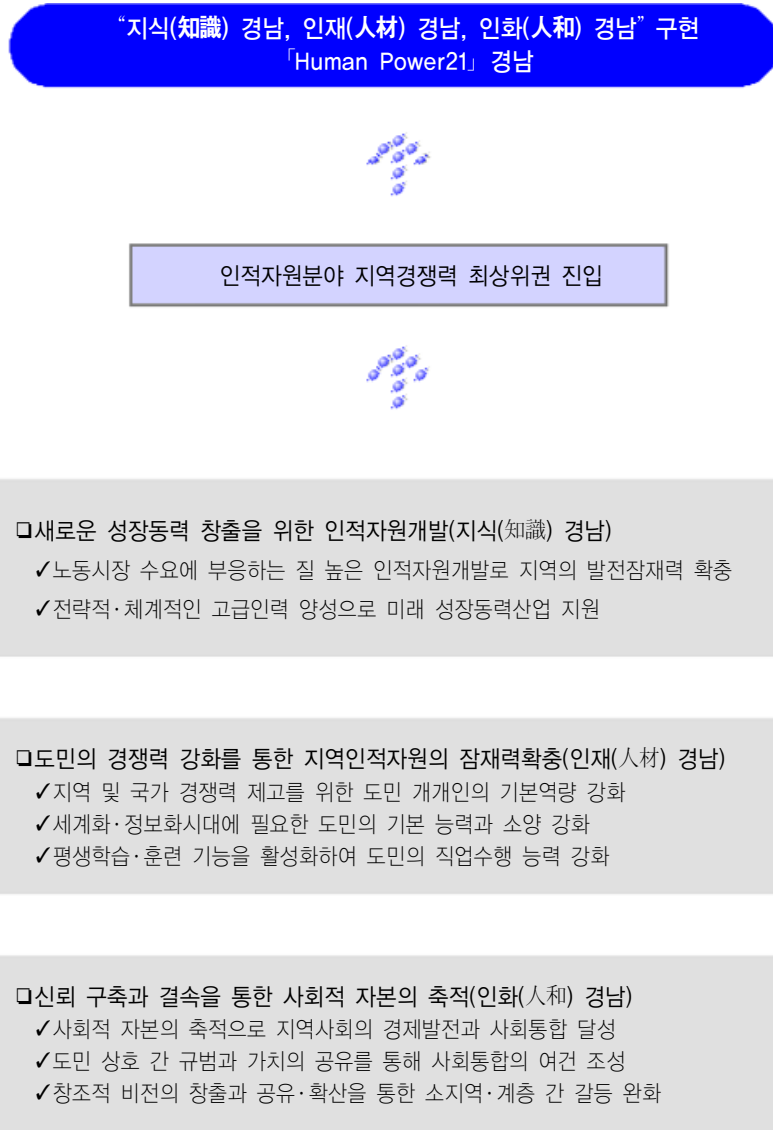
자료: 광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jhrd.net/>)

3.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가. 비전 및 주요기능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경남지역 내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배분·활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지방분권,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경남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제시된 경남인적자원개발의 비전은 ‘지식(知識) 경남, 인재(人材) 경남, 인화(人和) 경남’ 구현을 통해 인적자원분야 지역경쟁력 최상위권 진입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위한 세부목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도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적자원의 잠재력 확충, 신뢰 구축과 결속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4-7] 경남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비전체계



자료: 경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2009).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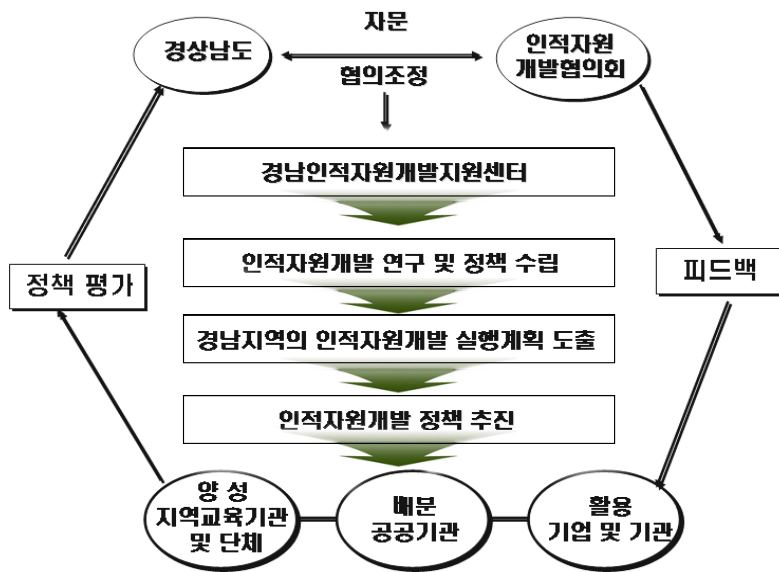
한편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능은 지역

인적자원 관련 정책 연구·개발, 지역인재육성사업 운영 및 평가, 지역인적자원개발 DB, 인프라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활용 지원, 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그밖에 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사업 추진체계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협의회와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4-8] 경남인적자원개발센터의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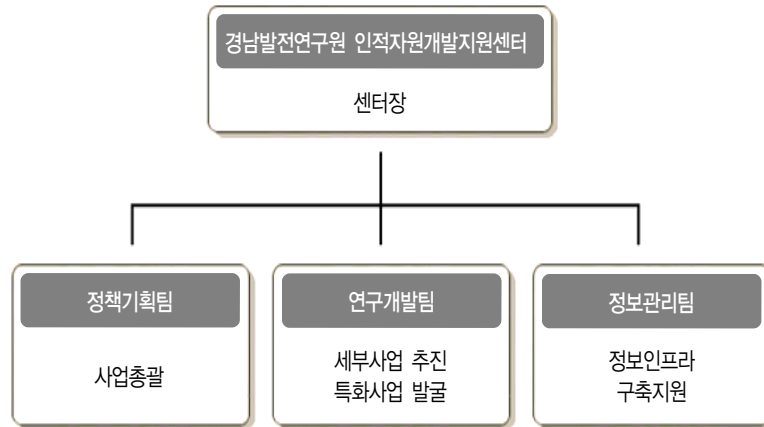
자료: 경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2009).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11쪽.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남의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담당에서 구심점이 되어 인재육성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정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 및 사업 발굴, 지역사회(지역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 경남 RHRD 지원센터를 지역 허브로 육성 및 활용, 지역인재육성사업 우수 사례 모델 발굴·육성을 담당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도지사를 의장으로 도교육감, 도의회위원장, 시장군수장협의회 의장 등 도내 유관기관장 30명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남 인적자원개발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과 육성·배분·활용에 관한 사항, 경남도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RHRD 정책을 위한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Think-Tank 기능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경남지역 내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배분·활용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지방분권,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팀,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연구개발팀, 정보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정보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9]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자료: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nhrd.or.kr/>)

다.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사업 추진목표는 인적자원의 인프라 구축과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의 선진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원, 도민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인적자원의 잠재력 확충, 신뢰와 상생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정책 추진, 세계와 소통 가능한 열린 정책 추진, 규제와 구조의 개혁을 통한 정책 추진,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정책 추진의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4-6>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구분	주요 내용
추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의 인프라 구축과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의 선진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지식개발과 인적자원 양성 및 지원 강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거점인 지역 대학의 혁신과 기능 강화 -인적자원개발 기관 간 협력적 분업체계의 주도적 구축 및 지원 강화 -공공부문 인적자원의 개발과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 ● 도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인적자원의 잠재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 교육체계의 혁신을 통한 도민 기초역량 강화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여성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진취적·창의적 인재육성 및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의 강화 ● 신뢰와 상생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평생학습지역 구축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파트너십 구축 지원 -타인과 타문화에 대해 열린 공동체의 실현을 통한 지역인적자원의 선진화 유도 -산·학·관·연 등 인적자원개발 주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활성화 지원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조직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 ● 세계와 소통 가능한 열린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모든 인적자원을 지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유치·활용하는 개방화 및 글로벌화의 원칙을 견지 -정보화를 통해 지식·정보의 유통 및 확산에 있어 환경변화 및 세계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선진적 정책의 추진 ● 규제와 구조의 개혁을 통한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의 수월성과 시장 적합성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및 교육훈련기관의 구조와 교육프로그램을 개혁 ●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는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중심의 인적자원 활용구조에서 남성과 여성 전체를 포함하는 인적자원 개발로 발상을 전환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전반에 걸쳐 여성 인적자원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 -고학력 여성의 활용을 통해 노동시장의 여성고용의 질 제고 확보 노력

자료: 경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2009).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7~9쪽 재구성.

라. 사업 운영 현황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2009년도 핵심세부과제로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전 도민의 평생학습 능력 강화,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복지 증진,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였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핵심인재 양성의 세부 과제로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핵심인력 양성,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제시하였으며, 전 도민의 평생학습 능력 강화의 세부 과제로는 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기초교육(학제) 인력 양성,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복지 증진의 세부 과제로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활인력 양성, 여성 및 중고령자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공공 및 군분야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제시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의 세부과제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과 Globalization 실현을 위한 국제화 인력 양성을 제시하였다.

<표 4-7>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핵심세부 과제

정책영역	정책분야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핵심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의 전략산업 분야에서 도내 주요대학들이 세계적 수준의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지식개발 및 첨단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외 산업체와 대학 및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지역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유치 -지식 및 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지식 및 서비스산업분야에 대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생에 대한 취업보장 및 훈련의 질 향상 도모 •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의 성장동력인 지역 견인 산업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산·학·관 지원협력체제 구축

<표 계속>

정책영역	정책분야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련 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공급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역인적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도모 -수요자 중심의 근로복지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경남지역 내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개별적 노동능력을 향상
전 도민의 평생 학습 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기초교육(학제)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전 도민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 -영재교육, 소외계층의 인재육성에 주력하여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지식·교육 공동체를 형성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신지식 개발의 원천인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와 사회의 교육기반 확충 -창의적 사고와 학습의 일상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제 구축 •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체제 구축을 지원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평생학습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저소득층의 자활역량을 높이고 장애인, 고령자의 고용 및 평생 학습 지원체제를 구축 -정보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도민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의식향상을 도모하고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도모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복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활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 -사회적 기업을 설립·운영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 -농·어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능력배양을 위해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으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기여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의 체제 구축 -문화·예술인력의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여 지역문화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문화·예술 중심지역 이미지를 확산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으로 이 분야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여성 및 중고령자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인적자원의 능력개발과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고령화 사회 대비 중고령자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

〈표 계속〉

정책영역	정책분야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복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에서의 남녀평등 고용환경을 조성하며 보육시설 확충을 지원 • 공공 및 군분야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역 공공부문의 대외개방성을 확대하여 경쟁과 협력의 분위기가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도록 유도 -공공부문 내에서 자발적인 학습·훈련의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조직화를 유도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지역 노동시장분석과 인력DB 구축 등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조성 -지자체, 교육청, 기업, 대학, 훈련기관, 지역사회가 모두 참가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Globalization 실현을 위한 국제화 인력 양성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지역차원의 국제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한계 극복 -국내·외 산업체와 대학 및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지역의 국제화 인력을 양성하고 적극 활용 -기업의 국제화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훈련생에 대한 취업보장 및 훈련의 질 향상을 도모 -지자체, 교육청, 기업, 대학, 훈련기관, 지역사회가 모두 참가하는 지역차원의 국제화 인력양성의 활성화를 도모

자료: 경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2009).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13~15쪽 재구성.

또한 정책분야별로 총 27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핵심인재 양성 63개 과제,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36개 과제, 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기초교육(학제) 인력 양성 32개 과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33개 과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활인력 양성 40개 과제, 여성 및 중고령자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18개 과제, 공공 및 군분야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13개 과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24개 과제, Globalization 실현을 위한 국제화 인력양성 12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표 4-8> 경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2009년 과제 추진 현황

정책영역	정책분야	세부과제 수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핵심인재 양성	63	99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36	
전 도민의 평생학습 능력 향상	인적자원개발최적화를 위한 기초교육(학제) 인력 양성	32	65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33	
사회통합 및 교육· 문화·복지 증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활인력 양성	40	71
	여성 및 중고령자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18	
	공공 및 군분야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13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24	36
	Globalization 실현을 위한 국제화 인력 양성	12	
계			271

자료: 경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2009).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393쪽.

4.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가. 비전 및 주요기능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상응하는 지역 수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지원기구 설치를 통해 지역단위에서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의 조기 구축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가-지방이 연계되는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및 인적자원 개발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모델 정립을 위해 설립되었다.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비전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달성을 위한 POWER JEJU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제주경제의 혁신화, 인적자원의 국제화, 학교교육의 내실화, 도민 기본역량 강화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4-10]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비전체계



자료: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hrd.re.kr/>)

한편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능은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운영 실무 총괄 및 조정,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지역혁신위원회 산하 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활동 지원 및 정책 개발, 지역인적자원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지역인적자원개발 수급기관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연구정보 제공,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지역인적자원개발 조정 분석 평가 및 기초연구 조사 지원으로 되어 있다.

나. 사업 추진체계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정책관리팀, 시스템지원팀, 사무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관리팀은 정책 발굴·기획 및 추진, 계획 수립·평가·분석, 추진사업관리를 담당하며, 시스템지원팀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인력관리 DB 업데이트, DB 설계 및 구축을 담당한다. 또한 사무지원팀은 예산·결산·회계 업무, 센터 일반사무 및 홍보, 센터시설 및 장비관리, RHRD협의회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11]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



자료: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hrd.re.kr/>)

다. 사업 운영 현황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정책연구, 시범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세미나 및 전문가 포럼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연구와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과 RHRD 지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는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디지털 제주문화 콘텐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식사회 서포터즈를 위한 청소년 지식재산 아카데미,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퇴직공직자 활용 멘토 양성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다문화 강사 양성 프로그램, 제주지역 중장년층 전직 및 창업 아카데미, 제주지역 전통문화 체험가이드 양성 프로그램, 제주비즈니스 아카데미(브랜드 및 무역실무 과정),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느영나영’ 영어캠프, 제주지역 인재를 위한 Hi-Performance 리더 양성 프로그램, 잘사는 마을 만들기 지역설계사 양성 프로그램,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인재 DB 표준화 작업 및 시스템, 전략산업 DB 표준화 작업 및 시스템, 평생교육정보 관리시스템, 지역인재 DB 기초자료 조사(연차적 진행), 전략산업 DB 기초자료 공유화, 제주RHRD센터 웹사이트, 시범사업 DB 및 관리시스템, 연구사업정보 DB 시스템, 웹진·뉴스레터, 사이버홍보관, 통합 관리자 모드 및 개별 관리자 시스템, CMS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업데이트하였다. 이 밖에 RHRD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전문가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였다.

<표 4-9>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현황

구분	사업 내용
정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지식자본중심의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한 지역혁신·체계(RIS)구축,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정책 추진체계 정립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단계별·연차별 실천방향 제시 • 실행계획 수립 - 제주지역 산업구조 및 현황분석을 토대로 제주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지역적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별·연차별 실천방향 제시 • RHRD 지표 개발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제주문화 콘텐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지식사회 서포터즈를 위한 청소년 지식재산 아카데미 운영 •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퇴직공직자 활용 멘토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자 다문화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제주지역 중장년층 전직 및 창업 아카데미 운영 • 제주지역 전통문화 체험가이드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제주비즈니스 아카데미(브랜드 및 무역실무 과정) 운영 •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느영나영’ 영어캠프 운영 • 준비된 제주지역 인재를 위한 Hi-Performance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잘사는 마을 만들기 지역설계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 DB 표준화 작업 및 시스템 구축 • 전략산업 DB 표준화 작업 및 시스템 구축 • 평생교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인재 DB 기초자료조사(연차적 진행) • 전략산업 DB 기초자료 공유화 추진(연차적 진행) • 제주RHRD센터 웹사이트 개편 • 시범사업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연구사업정보 DB 시스템 구축 • 웹진·뉴스레터, 사이버홍보관 구축 • 통합 관리자 모드 및 개별 관리자 시스템 개발 • CMS 시스템 구축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HRD 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전문가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HRD 사업 관련 전문가 포럼 개최

자료: 제주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hrd.re.kr/>)

제3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성과

가. 센터 운영 성과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구성원들은 센터 운영의 가장 주요한 성과로 지역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4.35)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센터와 협의회 설치(4.30),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30)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4.00)과 지자체의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관심 증대(4.00)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강화(3.65),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DB 구축(3.65), 소외계층의 직업능력 개발(3.75),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에 기여(3.80),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원(3.85)의 경우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인재육성사업 도입 이후 이루어진 각종 센터 및 협의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기본적인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성과는 비교적 달성했으나, 프로그램 운영, DB구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 창출부분에 대한 성과는 아직 부족한 점을 시사한다. 특히 향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같은 부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현장 수요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0>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성과

운영 성과	평균	표준편차
지역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	4.35	0.587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센터와 협의회 설치	4.30	0.571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DB 구축	3.65	0.671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4.00	0.649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30	0.470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에 기여	3.80	0.696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원	3.85	0.875
지자체의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관심 증대	4.00	0.725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강화	3.65	0.671
소외계층의 직업능력 개발	3.75	0.639

한편 제시된 항목 이외의 성과로는 지역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민과 파트너십, 지자체의 정책 수립 기여, 지자체의 지원 확보, 지역 RHRD 역량 강화, 지역발전 모델 제시 등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기타 성과

항목	주요 성과
지역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인재육성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특별행정기관과 연계 사업 확대 • 대학 및 교육청 등 인적자원 관련 기관과 연계 •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 강화로 정보 공유
지역민과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지역민과 파트너십 기회 제공
지자체의 정책 수립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심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 활성화로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반영
지자체의 지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 장의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역인재육성재단 설립
지역 RHRD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 향상 • 지역단위 사업평가를 통한 평가체제 구축
지역발전 모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발전모델 제시 • 지역발전이 가능한 연구 성과 축적

2.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문제점

가. 센터 운영 문제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구성원들은 센터 운영에 있어서 국고 지원 예산의 감소(4.70)와 RHRD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의 불확실성(4.70)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적 장치 부재(4.35),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 조직 축소(3.90), 지자체의 관련 조례 및 제도 부족(3.85), 지자체의 대응투자 예산의 감소(3.45), 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홍보 부족(3.35) 문제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담 직원 확보 부족(3.15),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량 부족(3.05), 센터 간 네트워크 및 협조 부족(2.70)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최근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입법 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 조직 축소 등 센터 운영을 둘러싼 외부 환경 변화가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

운영 문제점	평균	표준편차
국고 지원 예산의 감소	4.70	0.571
지자체의 대응투자 예산의 감소	3.45	0.999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적 장치 부재	4.35	0.587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 조직 축소	3.90	0.641
RHRD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의 불확실성	4.70	0.470
지자체의 관련 조례 및 제도의 부족	3.85	0.671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량 부족	3.05	0.605

<표 계속>

운영 문제점	평균	표준편차
전담 직원 확보 부족	3.15	0.813
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홍보 부족	3.35	0.933
센터 간 네트워크 및 협조 부족	2.70	0.923

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구성원들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가장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센터의 위상 및 지위 저하(4.55), 예산 확보의 어려움(4.50), 중앙정부의 사업 지원 축소(4.45)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 저해(4.30),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축소(4.30), 센터의 조직 축소(4.05)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의 지역인재육성 사업과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폐지 시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 조직, 사업지원 등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센터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표 4-13>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	평균	표준편차
RHRD센터 위상 및 지위 저하	4.55	0.605
RHRD센터 조직 축소	4.05	0.605
RHRD센터 직원 및 연구진 확보의 어려움	3.75	0.550

<표 계속>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	평균	표준편차
RHRD 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	4.50	0.607
RHRD 사업의 지속성 저해	4.30	0.470
중앙정부의 RHRD 사업 지원 축소	4.45	0.510
지방자치단체의 RHRD 사업 지원 축소	4.30	0.470

다. 센터 운영 애로사항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법 및 제도적 측면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로 센터의 존립 근거 약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로 센터를 불필요한 조직으로 인식,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로 인한 사업 연속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수립 후 법 폐지 필요,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협의회 설치 부진 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담당 인력 측면의 애로사항으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준위의 불안정에 따른 고용불안정,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센터 불안정으로 인한 전문인력 유출 우려, 센터장의 연구직 겸임상태로 직무책임 및 직무몰입에 한계, 센터원의 처우 및 신분보장 열악, 센터원의 전담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 부족, 국비 지원의 감소에 따른 인력 정원의 감소,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나 자체연수 기회 부족 등이었다.

예산 측면의 애로사항으로는 국고지원금 및 지방비 감소, 정부의 예산 지원 감소로 지자체의 예산지원 감소, 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 제한, 예산 지원이 늦춰짐으로써 사업 수행에 제한,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비 배분방식에 대한 원칙 마련 및 일관성 유지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관 및 조직 측면의 애로사항으로는 지역인재육성 정책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과 효율성 부족,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의 조직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지역 인재육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 지역별 인적자원담당 업무에 대한 관심의 편차,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부재 등이었다.

사업 추진 측면의 애로사항으로는 예산 감소로 인한 지역의 인재육성 사업 축소 및 폐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보다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사업 중심 추진, 시도발전연구원 소속 조직(부산 제외)으로 인한 자체적인 사업추진 기획에 제약, 정책기획연구조사 확대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과 연계한 사업 축소,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한 사업 관리 어려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 및 결과 평가 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평가 부재, 지역의 요구 수렴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방향 설정 필요,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취업 연계에 있어서 어려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 부서 축소로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 전국 센터별 역할 정립 필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등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표 4-14>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애로사항

항목	애로사항
법 및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로 센터의 존립 근거 약화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로 센터를 불필요한 조직으로 인식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로 인한 사업 연속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수립 후 법 폐지 필요 •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협의회 설치 부진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존위의 불안정에 따른 고용불안정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 센터 불안정으로 인한 전문인력 유출 우려

<표 계속>

항목	애로사항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의 연구직 겸임상태로 직무책임 및 직무몰입에 한계 • 센터원의 처우 및 신분보장 열악 • 센터원의 전담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정 부족 • 국비 지원의 감소에 따른 인력 정원의 감소 •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나 자체연수 기회 부족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지원금 및 지방비 감소 • 정부의 예산 지원 감소로 지자체의 예산지원 감소 • 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 제한 • 예산 지원이 늦춰짐으로써 사업 수행에 제한 • 지역인재육성 지원 사업비 배분방식에 대한 원칙 마련 및 일관성 유지 부족
관련 기관 및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육성 정책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과 효율성 부족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조직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역 인재육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 • 지역별 인적자원담당 업무에 대한 관심의 편차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부재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감소로 인한 지역의 인재육성 사업 축소 및 폐지 •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보다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사업 중심 추진 • 시·도발전연구원 소속 조직(부산 제외)으로 인한 자체적인 사업 추진 기획에 제약 • 정책기획연구조사 확대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과 연계한 사업 축소 •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한 사업 관리 어려움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 •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 및 결과 평가 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평가 부재 • 지역의 요구 수렴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방향 설정 필요 •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 •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취업 연계에 있어서 어려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 부서 축소로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 • 전국 센터별 역할 정립 필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3.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발전방안

가. 센터의 향후 역할 및 기능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센터가 향후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기능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사업에 대한 참여(4.45)와 자체 사업 추진 역량 확보(4.4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센터별 사업 특성화(4.20),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4.10), 고용 및 일자리와 연계한 사업 추진(4.05), 사업성과에 대한 계량화(4.00)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공모 사업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기획 역량 강화(3.95), 광역경제권 사업에 적극 추진(3.85), 교육과학기술부 이외의 타 정부조직 사업 참여(3.80),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활성화(3.80)에 대한 추진 필요성도 높은 편이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감소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예고에 따른 센터 운영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자체 사업 추진 역량 확보가 필요함을 센터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인재육성과 관련된 최근 정책 방향인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그 추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15>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향후 역할 및 기능

역할 및 기능	평균	표준편차
공모 사업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기획 역량 강화	3.95	0.759
자체 사업 추진 역량 확보	4.40	0.598
교육과학기술부 이외의 타 정부조직 사업 참여	3.80	0.894

<표 계속>

역할 및 기능	평균	표준편차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4.10	0.788
고용 및 일자리와 연계한 사업 추진	4.05	0.686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	3.85	0.671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활성화	3.80	0.616
센터별 사업 특성화	4.20	0.616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사업 참여	4.45	0.510
사업성과에 대한 계량화	4.00	0.725

한편 제시된 항목 이외의 향후 역할 및 기능으로는 정부정책방향에 따른 사업 추진, 지자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센터의 비전과 전략수립, 센터 자체 사업 추진, 시·도교육청과 사업 연계, 타 부처의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전담 인력 확보, 타 기관과의 역할 분담, 지역 센터 간 연계, 연구조사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향후 기타 역할 및 기능

항목	주요 역할 및 기능
정부정책방향에 따른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사업에 대한 발굴 필요 •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발굴 및 홍보
지자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업무 추진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RHRD 사업 추진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영역의 사업 추진
센터의 비전과 전략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비전, 추진전략 수립 및 추진체제 재구축 필요
센터 자체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자체 연구사업 추진 • 지방비를 활용한 필수 수요 중심의 기획과제 추진
시·도교육청과 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사업 추진
타 부처의 사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표 계속>

항목	주요 역할 및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 지자체 장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 확보
전담 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인력확보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구상
타 기관과의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차이점 명확화
지역 센터 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센터 실무진 간의 연구회 결성 필요 • 지역별로 우수사업에 대한 공유 필요
연구조사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연구조사기능 강화

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가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폐지 후 대안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제시된 지역인재육성 및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과 같은 신규 지원법 제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지역인재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인재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음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거나 활용하자는 의견은 가장 우선순위가 낮았다.

이는 지역인재육성 정책 및 사업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폐지될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법 제정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법령으로서, 지역인재육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평생교육법에 관련 법령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경우에는 지

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으로서 법 개정을 위한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어렵고, 예산 지원의 근거 확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대안	우선순위
RHRD 관련 법(예: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신규 제정	1
평생교육법에 RHRD 관련 내용 개정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RHRD 관련 내용 개정	3
지방자치단체 RHRD 관련 조례 제정 및 활용	4

한편 제시된 항목 이외의 대안으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지자체가 자립적인 지역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시적(3년)으로 행·재정적인 지원 관련 조항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인재육성 지원체계 정비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점검과 관련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기타 대안

항목	대안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자립적인 지역인재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시적(3년)으로 행·재정적 지원 조항 마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인재육성 지원체계 정비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점검 조항 마련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의 주요 추진주체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인재육성 관련 조직 및 기관, 타 정부부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인재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해 온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시에도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법령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이 향후 사업의 일관적 추진에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4-19>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추진 주체

대안	우선순위
교육과학기술부	1
지방자치단체	2
지역의 인재육성 관련 조직 및 기관	3
타 정부부처(예: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4

한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의 추진 주체 선정이유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역인재육성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필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최상위 기관으로 사업 추진 필요,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주관부처로서의 지역인적자원의 방향 및 정책 설정 필요,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당초 목적인 중앙부처에서 연구 및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달성 촉진 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재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의 대안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필요, 향후 지역 자체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운영의 필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추진 주체 선정 이유

항목	선정 이유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지역인재육성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필요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최상위 기관으로 사업 추진 필요 •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주관부처로서의 지역인적자원의 방향 및 정책 설정 필요 •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당초 목적인 중앙부처에서 연구 및 사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달성 촉진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재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의 대안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 •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필요 • 향후 지역 자체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운영할 필요

한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이 폐지되는 대안으로 평생교육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 타 법령에 대체하거나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과 같은 신규로 대체입법을 제정해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제시된 법령 모두에 대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예산 지원 관련 조항(4.65), 센터 운영에 관한 조항(4.50),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조항(4.35)은 다른 조항에 비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인재육성 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이 기존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해당 법이 폐지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지원의 축소, 센터 운영의 불안정성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대체 법령 조항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2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령

법령	평균	표준편차
RHRD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법령	4.35	0.671
RHRD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법령	4.30	0.571
RHRD 협의회 구성에 관한 법령	3.95	0.759
RHRD 정책 책임관 지정에 관한 법령	4.05	0.826
RHRD 센터 운영에 관한 법령	4.50	0.607
RHRD 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법령	4.65	0.587
RHRD 사업 관련 주체에 관한 법령	4.30	0.733

한편 제시된 법령 이외에 추가되어야 하는 조항으로는 센터 구성원 자격, 센터 구성원 처우, 사업 심의 및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센터장 및 센터원의 요건 및 자격에 관한 법령,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법령, 센터원의 처우에 관한 법령, 지역인재육성 관련 사업(지경부, 노동부, 교과부)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법령, RHRD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법령, RHRD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령, RHRD 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법령, RHRD 관련 학회 및 협회지원에 관한 법령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법령

항목	기타 법령
센터 구성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 및 센터원의 요건 및 자격에 관한 법령 •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법령
센터 구성원 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원의 처우에 관한 법령
사업 심의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육성 관련 사업(지경부, 노동부, 교과부)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법령 • RHRD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법령

〈표 계속〉

항목	기타 법령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HRD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령
교육훈련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HRD 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법령 • RHRD 관련 학회 및 협회지원에 관한 법령

제4절 시사점

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폐지될 경우 센터의 존립 근거 약화, 구성원 확보의 어려움, 조직 축소, 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센터 운영의 근거 마련과 관련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는 평생교육법에 지역인재육성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 법령으로서, 지역인재육성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법이 평생교육법이기 때문에 신규법령 제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보다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 및 활용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타 법령 대체방안 및 신규 제정방안의 경우 타 법령과의 중복 문제, 소관 부처 문제, 법령 정비의 기간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역인재육성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며, 최상위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대안 마련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대안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2.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역할·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자체 사업 추진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감소,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예고 등으로 인해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향후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센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 및 일자리와 연계한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및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경우 점차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고용 및 일자리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센터 운영의 비전 및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존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원의 경우 고용불안정성, 전문인력 부족, 내부인력 유출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센터 구성원의 처우 및 신분보장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심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비 지원의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을 통해 센터 자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5 장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강경종

제1절 법령 정비 기본방향

현행 지역인재육성사업과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지역인재육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설치,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지정,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지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폐지될 경우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약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이후에도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령 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법령 정비의 방향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지역인재육성 관련 법령 마련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목표로 ①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 근거 마련,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③ 지역인재육성 관련 국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설정하였다.

법령 정비 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제시된 법령 중 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②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③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④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 ⑤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이 타 법령에 추가되거나, 새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정법령으로는 현재 지역인재육성사업은 평생교육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 타 법령 대체하는 방안과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등의 신규 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5-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의 기본 방향



제2절 법령 정비 세부방안

1. 타 법령 대체방안

가. 평생교육법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기존 법령 개정방안으로는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의 추진주체는 지역인재육성사업과 평생교육법의 소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법 개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교육법 개정의 제한점으로는 평생교육법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통합해야 하므로 법 개정이 커지는 데 따른 어려움,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지역인재육성 관련 기관 간 역할 중복 문제,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원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면 평생교육법 개정의 효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이후 주요 법령만을 쉽게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의 주요 이유인 평생교육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평생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인재육성 추진이 가능하고, 평생교육과 지역인재육성을 동일한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개정의 실현가능성으로는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며, 지역인재육성 정책 및 사업의 소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임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법 개정의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나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신규제정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주체, 효과, 제한 및 실현가능성

구분	내용
추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담당 소관부처로서, 지역인재육성과 관련있는 평생교육법 개정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법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통합해야 하므로 법 개정이 커지는 데 따른 어려움 •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 지역인재육성 관련 기관 간 역할 중복 문제 • 지역인재육성 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원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이후 주요 법령만을 쉽게 보완할 수 있는 대안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의 주요 이유인 평생교육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평생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인재육성 추진 가능 • 평생교육과 지역인재육성을 동일한 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 가능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의 현실성이 높음 • 지역인재육성 정책 및 사업의 소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임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법 개정의 실현가능성이 높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나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신규제정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음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법을 개정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의 관련 조항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는 제5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은 제16조와 관련이 있으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은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5-2> 평생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안)

구분	내용	관련조항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책무사항 규정 •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책무사항 규정 	제5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본계획 수립 규정 	신설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규정 • 협의회 심의 사항 규정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장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 규정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정 규정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필요 경비 지원 규정 	제16조

이를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조문(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경우 현행 평생교육법의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의 조항에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과 정책책임관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 평생교육법에는 없는 조항이므로, 신규로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표 5-3> 평생교육법 개정 조문(안)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p>제5조(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p>	<p>제3조(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u>인적자원개발정책</u>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u>인적자원개발</u>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p>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p>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p> <p>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p> <p>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p>
지역인적 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p>신설</p> <p>지자체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u>를 구성할 수 있다.</p>
인적자원 개발정책 책임관 지정		<p>신설</p> <p>지자체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관을 지정할 수 있다.</p>
지역인적 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	<p>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과 <u>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u>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p> <p>4.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p>

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기존 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의 추진주체는 현행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의 제한점으로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므로,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의 개정이 어렵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기존 조항과 중복 문제가 존재하며,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원 예산 및 근거 제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의 효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항 개정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의 실현가능성으로는 평생교육법 개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현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소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인데 반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식경제부 소관이므로,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개정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낮으나,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신규제정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주체, 효과, 제한 및 실현가능성

구분	내용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 및 지역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식경제부 소관이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관련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진

<표 계속>

구분	내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재육성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므로,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의 개정이 어려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기존 조항과 중복 문제 존재 지역인재육성사업 지원 예산 및 근거 제시 어려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 가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조항 개정 용이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법 개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현가능성이 존재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소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인데 반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식경제부 소관이므로,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데 어려움 평생교육법 개정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낮으나,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신규제정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음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을 개정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의 관련 조항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는 제3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제4조,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은 제12조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표 5-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안)

구분	내용	관련조항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책무사항 규정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책무사항 규정 	제3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본계획 수립 규정 	제4조

<표 계속>

구분	내용	관련조항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규정 협의회 심의 사항 규정 	제12조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장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 규정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정 규정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필요 경비 지원 규정 	

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조문(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경우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조항에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책무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4조(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 29조(시도발전협의회 등의 설치)에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없는 조항이므로, 신규로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표 5-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조문(안)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지역발전,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 계속>

구분	현행	개정안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제4조(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②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 ②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지역인적 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제29조(시도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는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시도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는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인적자원 개발정책 책임관 지정		신설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인적 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		신설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대체입법방안 :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신규 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방안으로는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를 대체하기 위한 법안으로 추진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소관부처이자 현재까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이므로, 우선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발전과 포괄적인 인재육성 및 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추진주체가 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신규제정의 제한점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를 고려할 때 신규 입법 제정의 어려움, 신규 제정의 절차에 따른 오랜 기간의 초래, 신규 제정에 따른 별도의 추진계획 전제, 기존 법령(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중복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 신규 제정을 위해서 타 정부부처와 협의 필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신규 제정의 효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를 보완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서,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고,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법령 제안이 가능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의 실현가능성으로는 인적자원개발 문제를 평생교육의 틀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가 고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는 신규 입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5-7>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추진주체, 효과, 제한 및 실현가능성

구분	내용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담당 소관부처로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 2안)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발전, 포괄적인 인재육성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표 계속>

구분	내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를 고려할 때 신규 입법 제정의 어려움 • 신규 제정의 절차에 따른 기간이 오래 초래됨 • 신규 제정에 따른 별도의 추진계획 전제 • 기존 법령(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중복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 • 신규 제정을 위해서 타 정부부처와 협의 필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를 보완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 •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및 예산 지원의 근거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법령 제안 가능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 문제를 평생교육의 틀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가 고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는 신규 입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움 • 평생교육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자체 및 지역 차원에서 지역인재육성 추진과 관련된 예산 확보, 조직 및 인력 확보차원에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즉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은 기존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주요 법령을 토대로 하되, 지역인재육성에 관련된 목적,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인적자원위원회 설치,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 지정, 인적자원개발 평가센터 지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의 구성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지자체 등의 책무(제3조), 지역인재육성계획 등의 수립(제4조), 지역인재육성 협의회 구성(제5조), 지역인재육성 정책책임관 지정(제6조), 지역인재육성 평가센터의 지정(제7조), 지역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제8조)를 기본 조항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제1조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조와 지역인재육성의 정책적 개념에 근거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2조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2조와 지역인재육성 정책 영역에 근거하여 지

역인재육성과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제3조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재육성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4조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5조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역인재육성 협의회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6조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장이 지역인재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인재육성 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7조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장의 지역인재육성 평가센터 지정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하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 5-8>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구성 및 개정 조문(안)

구분	조문	근거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은 <u>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u>지역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조 지역인재육성 정책적 개념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u>지역인재육성</u>”이라 함은 <u>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지역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u> “<u>지역인재육성 사업</u>”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u>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2조 지역인재육성 정책 영역

<표 계속>

구분	조문	근거
제3조 (지자체 등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재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
제4조 (지역인재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역인재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지역인재육성의 지원, 정책, 인력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
제5조 (지역인재육성 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장은 지역인재육성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재육성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협의회에서는 지역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교육, 직업교육, 훈련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
제6조 (지역인재육성 정책책임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지역인재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인재육성 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0조
제7조 (지역인재육성 평가센터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장은 인재육성 관련 연구기관 등을 지역인재육성 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
제8조 (지역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제3절 법령 정비 세부방안 종합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으로 제시된 평생교육법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신규제정의 3가지 방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법령 정비 방안의 추진주체 측면에서는 평생교육법 개정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인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방안은 지식경제부가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신규제정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가 주체가 될 수 있다.

법령 정비 방안의 제한 측면에서는 평생교육법 개정의 제한점이 가장 낮은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신규제정방안은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경우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소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인 반면 법령의 소관부처는 지식경제부로 상이하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규제정방안은 신규 입법 추진에 따른 문체 및 기간소요, 추진계획 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 정비 방안의 효과 측면에서는 신규제정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며, 평생교육법 개정 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방안의 순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기존의 인재육성사업의 연속적인 추진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제정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평생교육법 개정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법령 정비 방안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평생교육법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나 신규제정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다소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이 교육과학

기술부 담당사업이므로, 동일한 부처의 소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령 정비 방안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해서는 평생교육과 지역인재육성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며, 기존의 평생교육 관련 조직과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법령 개정에 따른 상호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필요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시 기존의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신규제정을 위해서는 신규입법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과와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비교한 결과 방안 추진의 우선순위로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평생교육법 개정이 어려운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혹은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의 신규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5-9>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 비교 종합

구분	평생교육법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가칭)지역인재육성지원법 신규제정
추진 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 지식경제부	• 교육과학기술부(1안) • 행정안전부(2안)
제한	• 하 -평생교육과 인적자원 개발기본법 통합에 따른 문제	• 상 -소관부처의 상이함으로 인한 어려움	• 상 -신규 입법 추진에 따른 문제, 기간 소요, 추진계획 설정 어려움

<표 계속>

구분	평생교육법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가칭)지역인재육성지원법 신규제정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교과부에서 지속적인 담당 가능 -평생교육과 관계 설정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사업 추진 가능 -소관부처(지정부)의 적극적 참여 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이상적 대안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가능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사업과 법령의 소관부처가 동일(교과부)하므로 높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 -사업(교과부)과 법령(지정부)의 소관부처가 상이로 낮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 -신규입법 추진의 절차문제, 추진주체문제, 중복 법령문제로 낮은 편
신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과 지역인재육성(RHRD) 관계 정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부와 지정부의 법령 개정에 따른 협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입법 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우선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교과부 소관 법령이며, RHRD와 관련성을 고려할 때 최우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순위 -평생교육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RHRD 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차선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순위 -평생교육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으로 추진

제 6 장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이상돈·강경중·강일규·현영섭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비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2002년부터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지역차원의 인재육성 기반 확충, 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담당 인력 확보,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최근 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대한 입법 예고, 지역인재육성 정책 방향의 변화 및 사업지속성 불명확,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국고 예산 지원의 감소 등의 조직 운영의 위협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센터 내 전문인력 부족, 고용의 불안정성,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내부 역량 부족, 조직 축소 등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인재육성 정책 및 사업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변화와 내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비전 수립과 과제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비

진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6-1]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비전 체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비전으로는 지역인재육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로는 국가의 지역인재육성 정책 선도, RHRD 센터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RHRD 센터 내부 역량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RHRD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보완, RHRD 센터 사업 추진

방향 재설정, RHRD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 RHRD 센터 위상 강화 및 인력확보로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지자체의 지역인재육성 지원 및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추진과제

1. RHRD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보완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가 논의되면서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의 법·제도적 지원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존립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한 세부방안으로는 첫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령 정비 시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대체하는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을 신규 제정함으로써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신규 입법 추진의 문제점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정책 및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법령 정비가 불가

피할 경우에는 센터가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기간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재육성 관련 입법 및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도입되고 진행된 사업이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부합한 인재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속에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재원확보와 추진역량을 갖추기 위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체적인 추진의지가 약할 수 있지만, 법령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6-1> RHRD 센터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보완 방안

세부과제	세부방안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 (가칭)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신규제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 • 법령 정비가 불가피할 경우 한시적 기간동안 센터 운영을 지원할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조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례에 근거한 센터 운영 •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의 조례 마련

2. RHRD 센터 사업 추진 방향 재설정

그동안의 지역인재육성사업의 패러다임은 법적 차원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관련부처 차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국고지원금으로 대변된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가 논의

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 담당부서가 축소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센터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전면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지자체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정책 방향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역인재육성사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고용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광역사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지역인재육성사업을 통해 고용과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이외의 정부부처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육성 정책 및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타 정부부처의 관련 사업은 지역 내 다른 조직과 기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노동부의 지역고용사업이나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사업과 같은 관련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 방향을 다각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자체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지역의 수요를 중심으로 내외부 전문가와 협력 기획과제를 구상함으로써 지방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6-2> RHRD 센터 사업 추진 방향 재설정 방안

세부과제	세부방안
지자체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연계된 사업 추진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정부정책 방향에 따른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사업에 대한 발굴 •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발굴 • 고용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이외의 정부부처 사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등의 지역인재육성 관련 사업 참여 •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사업 추진
RHRD 센터 자체사업 추진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연계된 자체사업 추진 • 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체 연구 역량 강화

3. RHRD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법적 문제와 함께 가장 큰 걸림돌은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조직 및 예산의 경우 중앙부처의 지원 및 국고지원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조직 및 예산 확보의 지속가능성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인재육성 담당 조직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인재육성 정책 및 사업 영역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센터구성원들의 경우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둘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 방향이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수행하고자 하지만, 지역별로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때까지는 국고지원금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자체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연계된 사업 추진이나 타 정부부처 및 기관의 사업 참여를 통한 예산 확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6-3> RHRD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 방안

세부과제	세부방안
RHRD 센터 지원을 위한 조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직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RHRD 센터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연계된 사업 추진으로 자체 예산 확보 • 타 정부부처 및 기관의 사업참여를 통한 예산 확보

4. RHRD 센터 내부 역량 기반 구축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내부 역량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센터 구성원들의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과 우수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우수 인력 확보 및 구성원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감소되면서

향후 센터의 인력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센터 직원 중 상당수가 신분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이직이 많으며,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센터 인력의 신분보장이 센터의 내부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은 그동안의 센터 운영의 장점, 지역사회 기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과 센터 운영의 당위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운영 표준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준모델은 업무범위, 직제구성, 인력운영, 재원조달 및 예산확보과 관련된 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4> RHRD 센터 내부 역량 기반 구축

세부과제	세부방안
우수 인력 확보 및 구성원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센터 인력의 신분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 자체연수 및 세미나를 통한 구성원 전문성 강화
센터 운영 및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우수사례 홍보 강화 • 센터 운영의 장점,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홍보 강화
센터 운영 표준모델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센터 운영체제 표준모델 마련 • 표준모델을 활용한 센터 간 역할 분담

제3절 법령 정비 방안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비전 체계 및 추진과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①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 ② 사업추진방향 재설정, ③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확보, ④ 센터 내부 역량 기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이 추진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6-5> 법령 정비 방안의 추진여부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관련 여건 변화

구분	법령 정비 방안 추진시	법령 정비 방안 미추진시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대안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상실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재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지속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자금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재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감소 추세 지속 국비 지원 감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어려움
조직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가능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협의회 및 관련 조직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존립 위협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협의회 및 관련 조직 유명 무실화 가능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지속적 사업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우선 법령 정비 방안이 추진될 경우와 미추진될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관련된 여건 변화는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 측면에서는 법령 정비 방안 추진시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대안할 수 있는 법적 지

원 근거 확보가 가능하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역인재육성의 기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미추진시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상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 지원 측면에서는 법령 정비 방안 추진시에는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가 지속되고,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자금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반면 미추진시에는 인재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국비 지원 감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체계 측면에서는 법령 정비 방안 추진시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협의회 및 관련 조직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미추진시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존립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협의회 및 관련 조직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 운영 측면에서는 법령 정비 방안 추진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반면 미추진시에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할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6> 법령 정비 방안의 추진여부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구분	법령 정비 방안 추진시	법령 정비 방안 미추진시
사업 추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방향에 따른 사업 추진 초광역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업 추진 고용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타 정부부처 사업 참여 추진

<표 계속>

구분	법령 정비 방안 추진시	법령 정비 방안 미추진시
예산 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국비 확보 국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투자비용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연계된 사업 추진을 통한 자체 예산 확보 타 정부부처 사업 참여를 통한 자체 예산 확보
법적 근거 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정비 방안에 따른 사업 추진,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관련 제도 적극 활용
센터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중점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이 추진될 경우 사업 추진 방안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추진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주요 방향인 초광역사업 및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비용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는 법령 정비 방안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센터 구성원들의 신분 안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센터 운영 방안 차원에서는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 추진 방안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타 정부부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 방안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연계된 사업 추진을 통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거나 타 정부부처 사업 참여를 통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확보 방안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센터 운영 방안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재육성 정책의 중점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SUMMARY

The Study toward Reestablishment about Role and Function of RHRD Center

Sang-Don Lee Kyeong-Jong Kang
Il-Gue Kang Young-Sup Hyun

1.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establish roles and functions of RHRD center according to abolition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ic act. For achieving the purpose, 5 analyses were used as follows; 1) analysis about concepts, policies and laws of RHRD. 2) analysis about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s of RHRD, 3) analysis about current status, performances, and problems of RHRD center, 4) development about directions of laws according to abolition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ic act, 5) development about roles and functions of RHRD center.

2. Concept, policy, and law related to RHRD

The new directions of government changed from balance and

distribution to autonomy and competition. Therefore, RHRD policy is to promote regional autonomy in strengthening capacity and competition for RHRD. The RHRD means regional systematic efforts that targeted a local resident to train, distribute, utilize human resources. The law related to RHRD wer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ic act, lifelong education ac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t.

3. Performances and Problems of RHRD center

The performances of RHRD center can be identified as operation of centers and councils related to RHRD, Establishment of basic plan abou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tc. But the actual performance such as operation of RHRD program, construction of DB, and education of local resident were shortage. The problems of RHRD center can be identified as decrease in budget, legal notice about abolition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ic act, and reduction of organization related RHRD.

4. Improvement Alternatives of the Law Related to RHRD

As a abolition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ic act, the alternatives of the law related to RHRD are developed. The direction of that is to develop regional human resource according to abolition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asic act. For achieving this direction, objectives of alternatives were developed as follows: 1) Preparation of legal basis to push forward RHRD, 2) Preparation of institutional basis to operate RHRD center, 3) Preparation of supporting

budget basis. These alternatives were required as follows laws; 1) Duty of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2) Establishment of basic plan abou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3) Composition of council for RHRD, 4) Designation a person in charge of RHRD, 5) Operation of RHRD center. Three alternatives were suggested as follows; 1) Revis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2) Revis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t, 3) Enactment of a new law such as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upporting act.

5. Directions and Tasks about Role and Function Related to RHRD Center

The final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directions and tasks to reestablish roles and functions of RHRD center. Main vision of RHRD center for this goal is to lead regional human resources and to reinforce regional competitiveness. For achieving this vision, objectives of RHRD center were developed as follows: 1) Leading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 Flexible response of external environment change surrounding RHRD center, 3) Reinforcement of internal competitive of RHRD center. Four areas of tasks were identified for RHRD center; 1) Supple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to operate RHRD center, 2) Re- establishment of operation direction for RHRD center, 3) Securement of organization and budget to push ahead with RHRD, 4) Construction of internal capability of RHRD center.

참고문헌

- 강경종(2010).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 강일규·이남철·이의규·윤여인(2007).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이남철·김용현(2009). 『지역 인재개발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경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2009).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09).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09-269호.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계획.
- 김중환(2008). 『지역인재육성 사업 인력 역량 강화의 방향과 과제』, 지역인재육성 사업의 방향과 과제 정책세미나 자료집.
- 김진덕(2008). 『새정부 RHRD 정책의 방향과 시사점』, 『직업과 인력개발』, 2008 여름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류재경(2003).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류장수·김중환(2008). 『지역인재육성 사업설계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손유미·오영균·고경훈·현영섭·진미석·송창용(2008). 『새로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인재육성 발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남철(2003).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일(2008).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이론과 경험』, 2008년 경제학 고등학술대회 자료집.
- 이재홍(2006).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DB구축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직업과 인력개발』, 2006 겨울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호수(2009). 『국가발전과 지역인재육성정책』, KEDI RHRD-Net 출범 기념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 임준희(2006).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직업과 인력개발』, 2006 가을호, 4~11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국RHRD센터 협의회(2008). 지역인재개발센터 협의회 워크숍.
- 정기오(2010).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 지역발전위원회(2008). 2008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 최병학(2010). 『전환기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 쟁점과 대안』,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 현영섭 · 홍영란 · 김진덕(2008). 『지역인재육성사업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2009). 『지역인재육성정책과 RHRD-Net 출범의 의의』, KEDI RHRD-Net 출범 기념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 홍영란 · 현영섭 · 이남철 · 강영훈(2007). 『지역별 RHRD 정책여건 분석과 향후 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Desimone, R. L., Werner, J. M., & Harris, D. M.(2002). *Human resources development(3ed)*, Orlando: Harcourt College Publishers.
- Gilley, J. W., & Eggland, S. A.(1989). *Principle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Inc.
- Nadler, L.(1970). *Developing human resource*. Austin: Learning concept.
- McLagan, P. A.(1989). "Systems model 2000: Matching system theory and future HRD issues", In D. B. Gradous(Ed). *System theory applied to human resources development*(pp. 61~90). VA: ASTD press.
- Swanson, R. A., & Holton, E. F.(2001). *Foundation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부록 1]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질문지(개인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원의 연구진은 각 지역의 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1)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2) RHRD 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3) RHRD 센터의 향후 역할과 기능, 4) 응답자 일반사항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지역인재육성 정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4월

※ 다음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1. 다음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센터의 입장에서 각 문제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RHRD 센터 위상 및 지위 저하	①	②	③	④	⑤
2) RHRD 센터 조직 축소	①	②	③	④	⑤
3) RHRD 센터 직원 및 연구진 확보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4) RHRD 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RHRD 사업의 지속성 저해	①	②	③	④	⑤
6) 중앙정부의 RHRD 사업 지원 축소	①	②	③	④	⑤
7) 지방자치단체의 RHRD 사업 지원 축소	①	②	③	④	⑤

☞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2. 다음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따른 **대안**입니다. 제시된 대안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생교육법에 RHRD 관련 내용 개정
- ②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RHRD 관련 내용 개정
- ③ RHRD 관련 법(예: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신규 제정
- ④ 지방자치단체 RHRD 관련 조례 제정

☞ 기타 다른 대안이 있다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3. 다음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폐지에 따른 **대안을 추진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제시된 주체 중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과학기술부 ② 타 정부부처(예: 노동부)
- ③ 지방자치단체 ④ 지역의 인재육성 관련 조직 및 기관

☞ 추진주체를 선정한 주요 이유나 근거를 작성해 주십시오.

4. 다음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이 폐지되는 대안으로 타 법령에 대체(예: 평생교육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거나 신규로 대체입법을 제정(예: 지역인재육성지원법)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법령**입니다. 각 법령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령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RHRD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법령	①	②	③	④	⑤
2) RHRD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법령	①	②	③	④	⑤
3) RHRD 협의회 구성에 관한 법령	①	②	③	④	⑤
4) RHRD 정책 책임관 지정에 관한 법령	①	②	③	④	⑤
5) RHRD 센터 운영에 관한 법령	①	②	③	④	⑤
6) RHRD 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법령	①	②	③	④	⑤
7) RHRD 사업 관련 주체에 관한 법령	①	②	③	④	⑤

☞ 기타 포함되어야 하는 법령이 있다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RHRD 센터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5. 다음은 RHRD 센터 운영에 따른 성과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센터의 입장에서 각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지역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센터와 협의회 설치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DB 구축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①	②	③	④	⑤
6)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에 기여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지자체의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관심 증대	①	②	③	④	⑤
9)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10) 소외계층의 직업능력 개발	①	②	③	④	⑤

☞ 기타 성과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6. 다음은 **RHRD 센터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센터의 입장에서 각 문제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국고 지원 예산의 감소	①	②	③	④	⑤
2) 지자체의 대응투자 예산의 감소	①	②	③	④	⑤
3)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에 따른 법적 장치 부재	①	②	③	④	⑤
4)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 조직 축소	①	②	③	④	⑤
5) RHRD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의 불확실성	①	②	③	④	⑤
6) 지자체의 관련 조례 및 제도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7)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량 부족	①	②	③	④	⑤
8) 전담 직원 확보 부족	①	②	③	④	⑤
9) 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홍보 부족	①	②	③	④	⑤
10) 센터 간 네트워크 및 협조 부족	①	②	③	④	⑤

☞ 기타 문제점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7. 다음은 **RHRD 센터 운영의 애로사항**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센터의 입장에서 각 영역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법 및 제도 측면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인력 측면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예산 측면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관련 기관 및 조직 측면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기타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다음은 **RHRD 센터의 향후 역할 및 기능**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8. 다음은 **RHRD 센터가 향후 갖추어야 할 역할 및 기능**입니다. 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역할 및 기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공모 사업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기획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자체 사업 추진 역량 확보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과학기술부 이외의 타 정부조직 사업 참여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①	②	③	④	⑤
5) 고용 및 일자리와 연계한 사업 추진	①	②	③	④	⑤
6)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	①	②	③	④	⑤
7)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8) 센터별 사업 특성화	①	②	③	④	⑤
9)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사업 참여	①	②	③	④	⑤
10) 사업성과에 대한 계량화	①	②	③	④	⑤

☞ 기타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9. 향후 RHRD 센터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지역인재육성 정책(사업) 및 RHRD 센터 운영에 관한 기타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인재육성 정책(사업)에 관한 의견

☞ RHRD 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

※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가 소속된 시도는? _____시(도)
2. 귀하가 소속된 조직은? _____
3. 귀하의 직급(직위)은? _____
4.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_____
5. 귀하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_____

☐ 감사합니다 ☐

[부록 2]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질문지(센터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원의 연구진은 각 지역의 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1)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관련 주요 현황, 2)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3) 응답자 일반사항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지역인재육성 정책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4월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관련 주요 현황

1. 귀하가 소속된 시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관련 기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귀하가 소속된 시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관련 제도 및 주요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귀하가 소속된 시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관련 조례 및 주요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귀하가 소속된 시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관련 예산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중앙정부 지원예산 및 적절성 여부

☞ 2009년 지자체 자체 예산 및 적절성 여부

☞ 2009년 관련 기관의 대응투자 예산 및 적절성 여부

☞ 2009년 기타 지원예산 및 적절성 여부

5. 귀하가 소속된 시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관련 **담당 인력**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인력 수 및 적절성 여부

☞ 지원센터의 인력 수 및 적절성 여부

☞ 기타 관련 인력 수 및 적절성 여부

6. 귀하가 소속된 시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실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에 수행한 주요 정책 및 사업(예: 정책기획 및 연구조사, DB구축 및 운영, 고용사업 등의 주요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그동안 수행한 주요 사업 중 우수사례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7. 지역인적자원개발(지역인재육성) 관련하여 다음 각 항목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 및 제도 측면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인력 측면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예산 측면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관련 기관 및 조직 측면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기타 문제점 및 애로사항

8. 향후 지역인적자원지원센터(RHRD 센터)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향후 지역인적자원지원센터(RHRD 센터)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지역인재육성 정책(사업) 및 RHRD 센터 운영에 관한 기타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인재육성 정책(사업)에 관한 의견

☞ RHRD 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

※ 응답자 일반사항

1. 귀하가 소속된 시도는? _____시(도)

2. 귀하가 소속된 조직은? _____

3. 귀하의 직급(직위)은? _____

☞ 감사합니다 ☞

■ 저자 약력

- 이상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강경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강일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현영섭
 - 경북대학교 교수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 발행연월일	2010년 4월 29일 인쇄 2010년 4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권 대 봉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인 쇄 처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111-1 933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값 6,000원>